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사업설명서 6-3

(감사관, 행정국)



 충청남도교육청





# 목 차 Contents

□ 사업설명서 부분별 해설	1
----------------	---

## I. 세출예산(증추경)

1. 감사관	5
2. 총무과	11
3. 행정과	57
4. 재무과	67
5. 시설과	101
6. 안전총괄과	115

## II. 세출예산(감추경)

1. 감사관	159
2. 총무과	167
3. 행정과	183
4. 안전총괄과	201



## 사업설명서 해설

### 1. 항목별 해설

#### 가. 세출예산 요구 목록

- 요구 목록은 예산서 사업내역 사업명 기준(세세부사업 하위)
  - ※ 예산서 표기: 가.○○○○, 나.○○○○
- 지역배분: 도교육청 사업부서로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재원 배분된 사업
  - ※ 교육지원청 예산이나, 사업설명서는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 포함(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에는 세출예산 요구 목록만 표기)

#### 나. 사업설명

- 1)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대상, 추진기간, 사업주체, 총사업비, 증감사유, 사업내용, 편성 근거
- 2) 산출근거
  - 구분: 실제 추진되는 상세사업으로 구분
  - 사업내역: 예산서, 각목내역서의 사업내역 표기
  - 변동사항은 사업내용, 사업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표기
  - 미변동사업: 해당사업내에서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금액  
(기존 본예산 편성 사업)
  - 총사업비: 기정예산 + 추경예산
- 3) 편성 요구액 및 재원
  - 재원 부분의 경정예산은 총사업비인 2021본예산 + 1회추경예산
- 4) 지역배분 내역 : 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된 경우 표기

### 2. 미작성 사업

가. 공무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사업

나. 기존에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계속비사업 조서 참조)

※ 신규 계속비 편성 사업은 사업설명서 작성



# I. 세출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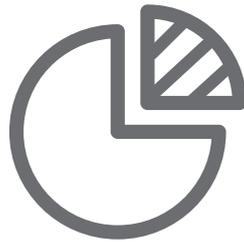
(증추경)





## I . 세출예산(증추경)

### 1. 감사관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

○ 부서(기관)명 : 감사관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화상감사장구축	8	454	91	10,000	0	10,000
합 계					10,000	0	10,000

감사관		<b>화상감사장구축</b>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1			단위사업	감사관리			
기존			세부사업	감사관리			
신규	○		세세부사업	감사운영			
예산서	454쪽	각 목	91쪽	담당자	주무관	이민규	☎640-7927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책임있고 공정한 자체감사 운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현장지원 중심의 예방 감사 활동 전개, 현장 대면 최소화로 코로나19 대응과 학교업무 최적화 지원
- 사업대상 : 2021 종합감사 대상 214개 기관·교 중 소규모학교 18개교  
(2020년도 8개교 → 2021년도 18개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10,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10,000천원)**  
※증감사유 : 본청 도민감사관실을 비대면감사장으로 활용하고자 비품구입비 10,0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초등 7학급 이하, 중등 3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화상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 실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감사를 병행하여 운영
- 편성근거 : 2021 자체감사 계획

V. 2021년도 자체감사 추진 계획
1. 종합감사
가. 종합감사 제도개선 운영
■ 소규모학교 비대면 화상감사
- 기준: 초등학교 7학급 이하, 중학교 3학급 이하
- 업무처리 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클린재정, 업무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으로 감사자료 분석·점검
- 도교육청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화상시스템 구축으로 수감기관과 소통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비대면 감사장조성	노트북	1,200,000원*6대=	7,200	0	7,200	-내용 ◦학교업무최적화 지원과 예방중심의 감사를 위한 비대면 감사 확대 실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 방식의 다양화 -대상: 비대면감사 대상교(18개교) -증감사유: 비대면감사장 조성을 위한 노트북, TV, 화상장비 등 구입
	비품구입	400,000원*7종=	2,800	0	2,800	
	소계		10,000	0	10,000	
합계 ①			10,000	0	10,00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10,000	0	10,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0,000	0	0	10,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10,000	0	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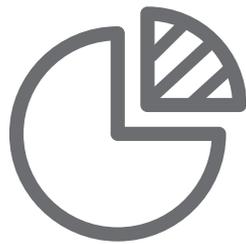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I . 세출예산(증추경)

### 2. 총무과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

○ 부서(기관)명 : 총무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건강보험부담금(교원)	14	122	147	38,355,619	36,683,296	1,672,323
2	노인장기요양부담금(교원)	16	122	147	4,418,567	3,758,347	660,220
3	연금부담금(교원)	18	122	147	135,038,615	132,829,831	2,208,784
4	퇴직수당부담금(교원)	20	122	147	40,987,955	40,317,528	670,427
5	재해보상부담금(교원)	22	122	147	715,673	703,967	11,706
6	건강보험부담금(지방공무원)	24	124	147	7,697,886	7,401,737	296,149
7	노인장기요양부담금(지방공무원)	26	124	147	886,796	758,337	128,459
8	연금부담금(지방공무원)	28	124	147	27,101,944	26,801,613	300,331
9	퇴직수당부담금(지방공무원)	30	124	147	8,226,190	8,135,031	91,159
10	재해보상부담금(지방공무원)	32	124	147	143,634	142,042	1,592
11	노인장기요양부담금(교육전문직원)	34	126	147	120,059	107,719	12,340
12	장애인지방공무원지원	36	153	148	70,885	35,000	35,885
13	직장어린이집운영	38	153	148	266,667	0	266,667
14	하계수련회	40	154	148	17,000	0	17,000
15	교육기록물관리기관설립	42	468	148	48,000	0	48,000
16	정보공시운영(국고)	44	468	148	17,600	0	17,600
17	주차공간확보	46	538	149	47,000	0	47,000
18	강당환경개선	48	538	149	170,000	0	170,000
19	미끄럼방지포장재설치	50	538	149	45,600	0	45,600
20	변기에어커튼설치	52	538	149	50,400	0	50,400
<b>합 계</b>					<b>264,426,090</b>	<b>257,674,448</b>	<b>6,751,642</b>

연번	사업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지역 배분	1.교육가족체험장운영	54	538	149	151,002	0	151,002
<b>합 계</b>					<b>151,002</b>	<b>0</b>	<b>151,002</b>

총 무 과	<b>건강보험부담금 (교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1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교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2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직자의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38,355,619천원(기정예산 36,683,296천원 + 추경예산 1,672,323천원)**
- ※증감사유 : 건강보험료의 기관부담요율의 변동(기존 3.335% → 3.43%)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편성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를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건강보험 부담금	건강 보험 부담금	1,118,239,609,000원* 3.43%=	38,355,619	36,683,296	1,672,323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관부담금 납부 -2021년도 건강보험료의 기관부담요율 변동에 따른 예산 증액(기존 3.335%→3.43%)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38,355,619	36,683,296	1,672,323	
합계 ①			38,355,619	36,683,296	1,672,323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38,355,619	36,683,296	1,672,323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8,355,619	0	0	38,355,619
기정예산 (B)	0	0	36,683,296	0	0	36,683,296
추경증감 (C=A-B)	0	0	1,672,323	0	0	1,672,323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7,374,069	36,123,267	1,250,801	96.7%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노인장기요양부담금 (교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2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교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2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직자의 노후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4,418,567천원(기정예산 3,758,347천원 + 추경예산 660,220천원)**
- ※증감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요율 변동(기존 10.25% → 11.52%)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 원활한 납부
- 편성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152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노인장기 요양부담금	노인 장기 요양 부담금	1,118,239,609,000원 *3.43%*11.52%=	4,418,567	3,758,347	660,2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관부담금 납부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요율 변동에 따른 예산 증액(기존 10.25%→11.52%)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4,418,567	3,758,347	660,220	
합계 ①			4,418,567	3,758,347	660,22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4,418,567	3,758,347	660,22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4,418,567	0	0	4,418,567
기정예산 (B)	0	0	3,758,347	0	0	3,758,347
추경증감 (C=A-B)	0	0	660,220	0	0	660,22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830,842	3,646,018	184,823	95.2%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연금부담금 (교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3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교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2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연금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35,038,615천원(기정예산 132,829,831천원 + 추경예산 2,208,784천원)**
- ※증감사유 : 교원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1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

###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1,118,239,609,000원 *12.076%=	135,038,615	132,829,831	2,208,784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135,038,615	132,829,831	2,208,784	
합계 ①			135,038,615	132,829,831	2,208,784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35,038,615	132,829,831	2,208,784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35,038,615	0	0	135,038,615
기정예산 (B)	0	0	132,829,831	0	0	132,829,831
추경증감 (C=A-B)	0	0	2,208,784	0	0	2,208,784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21,093,512	120,984,566	108,945	99.9%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퇴직수당부담금 (교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4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교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2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 퇴직 시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40,987,955천원(기정예산 40,317,528천원 + 추경예산 670,427천원)**
- ※증감사유 : 교원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3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

### [공무원연금법]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1,118,239,609,000원 *3.6654%=	40,987,955	40,317,528	670,427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40,987,955	40,317,528	670,427	
합계 ①			40,987,955	40,317,528	670,427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40,987,955	40,317,528	670,427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40,987,955	0	0	40,987,955
기정예산 (B)	0	0	40,317,528	0	0	40,317,528
추경증감 (C=A-B)	0	0	670,427	0	0	670,427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9,761,965	39,722,369	39,596	99.9%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재해보상부담금 (교원)</b>	정책 사업	인적자원운용
5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교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2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에게 재해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715,673천원(기정예산 703,967천원 + 추경예산 11,706천원)**
- ※증감사유 : 교원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을,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보상부담금”으로 본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재해보상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1,118,239,609,000원 *0.064% =	715,673	703,967	11,706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715,673	703,967	11,706	
합계 ①			715,673	703,967	11,706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715,673	703,967	11,706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715,673	0	0	715,673
기정예산 (B)	0	0	703,967	0	0	703,967
추경증감 (C=A-B)	0	0	11,706	0	0	11,706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751,497	742,580	8,916	98.8%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건강보험부담금 (지방공무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6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지방공무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4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직자의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7,697,886천원(기정예산 7,401,737천원 + 추경예산 296,149천원)**
- ※증감사유 : 건강보험료 기관부담요율 변동(기존 3.335% → 3.43%)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 원활한 납부
- 편성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건강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224,428,157,000원* 3.43%=	7,697,886	7,401,737	296,149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관부담금 납부 -2021년도 건강보험료의 기관부담요율 변동에 따른 예산 증액(기존 3.335%→3.43%)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7,697,886	7,401,737	296,149	
	합계 ①		7,697,886	7,401,737	296,149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7,697,886	7,401,737	296,149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7,698,571	0	0	7,698,571
기정예산 (B)	0	0	7,401,737	0	0	7,401,737
추경증감 (C=A-B)	0	0	296,834	0	0	296,834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7,492,487	7,241,734	246,488	96.7%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노인장기요양부담금 (지방공무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7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지방공무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4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직자의 노후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886,796천원(기정예산 758,337천원 + 추경예산 128,459천원)**
- ※증감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요율 변동(기존 10.25% → 11.52%)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편성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152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노인장기 요양부담금	노인 장기 요양 부담금	224,428,157,000원 *3.43%*11.52%=	886,796	758,337	128,4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관부담금 납부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요율 변동에 따른 예산 증액(기존 10.25%→11.52%)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886,796	758,337	128,459	
합계 ①			886,796	758,337	128,459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886,796	758,337	128,459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886,875	0	0	886,875
기정예산 (B)	0	0	758,337	0	0	758,337
추경증감 (C=A-B)	0	0	128,538	0	0	128,538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767,980	730,927	37,052	95.2%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연금부담금 (지방공무원)</b>	정책 사업	인적자원운용
8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지방공무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4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연금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27,101,944천원(기정예산 26,801,613천원 + 추경예산 300,331천원)**
- ※증감사유 : 지방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1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

###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224,428,157,000원 *12.076%=	27,101,944	26,801,613	300,331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27,101,944	26,801,613	300,331	
합계 ①			27,101,944	26,801,613	300,331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27,101,944	26,801,613	300,331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7,104,356	0	0	27,104,356
기정예산 (B)	0	0	26,801,613	0	0	26,801,613
추경증감 (C=A-B)	0	0	302,743	0	0	302,743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4,275,964	24,144,555	131,408	99.4%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퇴직수당부담금 (지방공무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9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지방공무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4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 퇴직 시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8,226,190천원(기정예산 8,135,031천원 + 추경예산 91,159천원)**
- ※증감사유 : 지방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3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

### [공무원연금법]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224,428,157,000원 *3.6654%=	8,226,190	8,135,031	91,159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8,226,190	8,135,031	91,159	
합계 ①			8,226,190	8,135,031	91,159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8,226,190	8,135,031	91,159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8,226,922	0	0	8,226,922
기정예산 (B)	0	0	8,135,031	0	0	8,135,031
추경증감 (C=A-B)	0	0	91,891	0	0	91,891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7,971,795	7,971,795	0	1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재해보상부담금 (지방공무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10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지방공무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4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에게 재해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43,634천원(기정예산 142,042천원 + 추경예산 1,592천원)**
- ※증감사유 : 지방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을,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보상부담금”으로 본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재해보상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224,428,157,000원 *0.064%=	143,634	142,042	1,592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143,634	142,042	1,592	
합계 ①			143,634	142,042	1,592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43,634	142,042	1,592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43,647	0	0	143,647
기정예산 (B)	0	0	142,042	0	0	142,042
추경증감 (C=A-B)	0	0	1,605	0	0	1,605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50,655	148,898	1,756	99.9%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노인장기요양부담금</b> <b>(교육전문직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11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6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직자의 노후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24,059천원(기정예산 107,719천원 + 추경예산 12,340천원)**
- ※증감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요율 변동(기존 10.25% → 11.52%)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편성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152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노인장기 요양부담금	노인 장기 요양 부담금	30,384,242,000원 *3.43%*11.52%=	120,059	107,719	12,3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관부담금 납부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요율 변동에 따른 예산 증액(기존 10.25%→11.52%)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120,059	107,719	12,340	
합계 ①			120,059	107,719	12,34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20,059	107,719	12,34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20,059	0	0	120,059
기정예산 (B)	0	0	107,719	0	0	107,719
추경증감 (C=A-B)	0	0	12,340	0	0	12,34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02,274	97,339	4,934	95.2%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장애인지방공무원지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영
12					단 위 사 업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기존 ○					세 부 사 업	교직원복지지원
신규					세세부사업	교직원근무여건개선
예산서	153쪽	각 목	148쪽	담당자	주무관	장성민 ☎640-8012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70,885천원(기정예산 35,000천원 + 추경예산 35,885천원)**
  - 산출식: 25,108천원(13,348원\*209시간\*9월) + 10,777천원(특수작업의자 등 보조공학기기 7종)
- ※증감사유 : 신규 장애인 지방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추가 신청에 따른 수요반영 필요
- 사업내용 : 장애인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인력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6조(지원의 세부내용)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 6. 10. 조례 제4714호>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장애인지방 공무원지원	위탁경비	70,885,000원*1식=	70,885	35,000	35,885	-내용 ○장애인지방공무원에게 보조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장애인 지방공무원 -증감사유: 신규 장애인 지방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추가 신청에 따른 수요반영 필요
	소계		70,885	35,000	35,885	
합계 ①			70,885	35,000	35,885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70,885	35,000	35,885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70,885	0	0	70,885
기정예산 (B)	0	0	35,000	0	0	35,000
추경증감 (C=A-B)	0	0	35,885	0	0	35,885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5,000	28,212	4,934	80.6%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직장어린이집운영</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영			
13			단 위 사 업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기 존	○		세 부 사 업	교직원복지지원			
신 규			세세부사업	교직원근무여건개선			
예산서	153쪽	각 목	148쪽	담당자	주무관	신수철	☎640-80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육아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공사 중에 있으며, 2021. 9월 개원 예정에 맞춰 운영을 민간위탁경비으로 추진
- 사업대상 :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총사업비 : **266,667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266,667천원)**  
- 위탁기간 3년간 어린이집 운영비: 24억 내외 예상

순	구 분	2021년 (8개월간)	2022년	2023년	2024년 (4개월간)	합 계
1	인 건 비	219,492	538,002	543,402	182,937	1,483,833
2	운 영 비	34,674	81,776	79,076	24,561	220,087
3	보육활동비	138,928	116,792	116,792	38,928	411,440
4	수익자부담경비	17,604	52,820	52,820	17,604	140,848
5	재산조성비	122,636	10,610	7,910	2,636	143,792
운영비 총금액		533,334	800,000	800,000	266,666	2,400,000
민간위탁 지원액(50%)		<b>266,667</b>	400,000	400,000	133,333	1,200,000

※증감사유 :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편성

- 사업내용 :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위탁
- 편성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직장 어린이집 위탁경비	민간위탁	266,667,000원*1식=	266,667	0	266,667	-내용 ◦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지원액 편성 -대상: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증감사유: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편성
	소계		266,667	0	266,667	
합계 ①			266,667	0	266,667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266,667	0	266,667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66,667	0	0	266,667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266,667	0	0	266,667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하계수련회</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영
14					단 위 사 업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기존					세 부 사 업	교직원복지지원
신규 ○					세 세 부 사 업	내직장사랑하기운영
예산서	154쪽	각 목	148쪽	담당자	주무관	신수철 ☎640-80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본청 부서 간, 팀 간 소통의 시간 마련
- 사업대상 : 본청 전 직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8.
- 총사업비 : **17,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17,000천원)**
- ※증감사유 : 하계수련회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조직문화 개선 및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본청 부서 간, 소통추진
- 편성근거 : 2021년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계획

총무과-9711(2021.04.24.)  
- 2021년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계획(안)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하계수련회	일반수용비	30,000원*100중*4회=	12,000	0	12,000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조직문화 개선 및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본청 부서 간, 소통 증진 -대상: 본청 전 직원 -증감사유: 하계수련회 추진 (7월 중 1박2일 3개조 추진예정)
	협의회	20,000원*50명*5회=	5,000	0	5,000	
	소계		17,000	0	17,000	
합계 ①			17,000	0	17,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7,000	0	17,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7,000	0	0	17,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17,000	0	0	17,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교육기록물관리기관설립</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15			단 위 사 업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기 존			세 부 사 업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신 규	○		세세부사업	기록물관리
예산서	468쪽	각 목	148쪽	담당자 기록연구사 박민영 ☎640-8046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남을 대표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도내 교육기관 중요기록물의 통합보존·활용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도내 유·초·중·고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
- 사업기간 : 2021. 8. ~ 2021. 10.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48,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48,000천원)**
- 사업내용 :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시설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의 검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추진
- 편성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2항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교육기록 물관리 기관설립	연구 용역비	48,000,000원*1식=	48,000	0	48,000	-내용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소계		48,000	0	48,000	
합계 ①			48,000	0	48,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48,000	0	48,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48,000	0	0	48,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48,000	0	0	48,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정보공시운영(국고)</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16			단 위 사 업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 관리			
기 존			세 부 사 업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신 규	○		세세부사업	학교정보공시제운영			
예산서	468쪽	각 목	148쪽	담당자	주무관	장승호	☎640-80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확한 정보공시 입력과 업무 수행을 통한 정보공시 신뢰성 제고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정보공시업무담당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7,6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성립전예산 17,600천원)**
- ※증감사유 : 지방이양사무 지원에 따라 신뢰성 있는 정보공시 제공을 위한 예산 증액
- 사업내용 :
  - 관련부서, 시·도교육청(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 대상으로 정기적 의견 수렴과 문의사항 분석을 통한 지침 개정 및 제작(약1,300부)
  - 정보공시-원천항목과 시스템의 연계 적용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현장테스트 지원용 노트북 구입(2대)
- 편성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정보공시 운영(국고)	일반수용비	20,000원*40종*19회=	15,200	0	15,200	-내용 ◦정보공시 업무담당자의 정기적 의견 수렴 및 문의 사항 분석을 통한 지침 개정 및 인쇄·배포 ◦정보공시-원천항목과 시스템의 연계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노트북 구입 -대상: 정보공시업무담당자 -증감사유: 지방이양사무 자원에 따라 신뢰성 있는 정보공시 제공을 위한 예산 증액
	노트북	1,200,000원*2대=	2,400	0	2,400	
	소계		17,600	0	17,600	
합계 ①			17,600	0	17,6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7,600	0	17,6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7,600	0	0	17,6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17,600	0	0	17,6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주차공간확보</b>	정 책 사 업	기관운영관리
17			단 위 사 업	교육행정기관시설
기 존			세 부 사 업	본청시설관리
신 규	○		세세부사업	본청시설
예산서	538쪽	각 목	149쪽	담당자 주무관 신수철 ☎640-80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이중주차 및 진입로 주변 주차 방지, 원활한 차량교통 및 진출입 대책 마련 필요
- 사업대상 : 본청 및 연구정보원 전 직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47,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47,000천원)**  
 ※증감사유 : 민원인 및 각종회의 개최 시, 청사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협소로 도로변 주차가 빈번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커 주차공간 추가확보 필요
- 사업내용 : 교육청 정문 앞 토지 1,000㎡를 임대하여 44대의 주차공간 확보
- 편성근거 : 민원인·교직원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계획

총무과-16404(2021.03.18.)  
- 민원인·교직원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안)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주차공간 확보	부지임차	임차료 22,000,000원*1식=	22,000	0	22,000	-내용 ○ 교육청 정문 앞 토지 1,000㎡를 임대하여 44대의 주차공간 확보 -증감사유: 민원인 방문 및 각종회의 개최 시, 청사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로변 주차 민원 해소
	시설비	시설비 25,000원*1,000㎡=	25,000	0	25,000	
	소계			47,000	0	
합계 ①			47,000	0	47,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47,000	0	47,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47,000	0	0	47,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47,000	0	0	47,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강당환경개선</b>				정 책 사 업	기관운영관리
18					단 위 사 업	교육행정기관시설
기 존					세 부 사 업	본청시설관리
신 규 ○					세 세 부 사 업	본청시설
예산서	538쪽	각 목	149쪽	담당자	주무관	이병엽 ☎640-801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빔프로젝터의 선명도가 낮아 회의자료 스크린 상영 시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자 함
- 사업대상 : 본청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170,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170,000천원)**  
 ※증감사유 : 강당 스크린 선명도 향상을 위해 빔프로젝터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
- 사업내용 : 실내조명 밝기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는 LED 전광판을 설치
- 편성근거 : 청사 시설개선(대강당 LED 전광판) 설치 계획

총무과-28579(2021.05.12.)  
 - 청사 시설개선(대강당 LED 전광판) 설치 계획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강당 LED 전광판 설치	전광판	취득비 160,000,000원*1식=	160,000	0	160,000	-내용 ◦ 실내조명 밝기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는 LED 전광판을 설치 -증감사유: 빔프로젝터의 선명도 한계성으로 인한 강당LED 전광판 설치
		시설비 10,000,000원*1식=	10,000	0	10,000	
	소계		170,000	0	170,000	
합계 ①			170,000	0	170,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70,000	0	170,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70,000	0	0	170,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170,000	0	0	170,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미끄럼방지포장재설치</b>	정 책 사 업	기관운영관리			
19			단 위 사 업	교육행정기관시설			
기 존			세 부 사 업	본청시설관리			
신 규	○		세세부사업	본청시설			
예산서	538쪽	각 목	149쪽	담당자	주무관	신수철	☎640-80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 개원에 따라 어린이집 진입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치하여 원아의 안전성 확보
- 사업대상 : 본청 내 진입로
- 사업기간 : 2021. 7. ~ 2021. 9.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45,6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45,600천원)**  
 ※증감사유 : 직장어린이집 진입로 및 경사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재 설치
- 사업내용 : 본청 내 진입로 약 1,200㎡에 미끄럼방지 포장재 설치(정문 51m, 어린이집입구 48m, 지하 주차장 입구 41m)
- 편성근거 : 본청 및 직장어린이집 진입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재 설치 계획

총무과-19125(2021.04.01.)  
- 본청 및 직장어린이집 진입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재 설치(안)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포장재 설치	포장재	시설비 38,000원*1,200㎡=	45,600	0	45,600	-내용 ○ 직장어린이집 진입로와 본청 경사진 진입로에 포장재 설치 -증감사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재 설치
	소계		45,600	0	45,600	
합계 ①			45,600	0	45,6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45,600	0	45,6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45,600	0	0	45,6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45,600	0	0	45,6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변기에어커튼설치</b>	정 책 사 업	기관운영관리			
20			단 위 사 업	교육행정기관시설			
기 존			세 부 사 업	본청시설관리			
신 규	○		세세부사업	본청시설			
예산서	538쪽	각 목	149쪽	담당자	주무관	이병엽	☎640-801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방역과 위생수칙이 강조됨에 따라 변기에어커튼 설치를 통해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 및 물 소비 절약
- 사업대상 : 본청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50,4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50,400천원)**  
 ※증감사유 : 2020년 하반기에 설치된 변기 이외에 본청과 연구정보원 변기에 에어커튼 설치
- 사업내용 : 기존 변기에 에어커튼 설치를 통해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
  - 에어커튼: 용변시 발생하는 악취를 빨아들여 세균을 물에 녹이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
- 편성근거 : 청사 시설개선(화장실 변기 에어커튼) 설치 계획

총무과-28580(2021.05.12.)  
- 청사 시설개선(화장실 변기 에어커튼) 설치 계획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변기 에어커튼 설치	변기 에어커튼	취득비 400,000원*126개=	50,400	0	50,400	-내용 ○ 기존 변기에 에어커튼 설치를 통한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 -증감사유: 2020년 하반기에 설치된 변기 이외에 본청 전체 변기에 에어커튼을 설치
	소계		50,400	0	50,400	
합계 ①			50,400	0	50,4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50,400	0	50,4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50,400	0	0	50,4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50,400	0	0	50,4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교육가족체험장운영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역배분 1			단 위 사 업	수련및봉사활동			
기 존			세 부 사 업	학생수련활동지원			
신 규	○		세세부사업	학생수련활동지원			
예산서	538쪽	각 목	149쪽	담당자	주무관	신수철	☎640-80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양수련원과 연계, 치유와 수련을 병행하는 숲 테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활용 교육재산을 활용, 지역재생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통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
- 사업대상 : 도내 학생과 학부모,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151,002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151,002천원)**  
 ※증감사유 : 폐교재산을 활용, 도내 학생과 학부모,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편성
- 사업내용 :
  - 공주(구.봉현분교): 캠핑, 테마형 카페 구축,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업
  - 보령(주포학생야영장): 캠핑, 해양수련원 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 편성근거 : 교육가족 체험장 설치 계획

총무과-28111(2021.05.07.)  
- 교육가족 체험장 설치 계획(안)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교육가족 체험장 운영	공주	설계비	1,495,806,000원*4.5%= 67,311	0	67,311	-내용 ○ 교육재산을 활용한 지역재생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통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 -증감사유: 교육재산을 활용한 도내 학생과 학부모,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편성
	보령	설계비	1,859,800,000원*4.5%= 83,691	0	83,691	
	소계			151,002	00	
합계 ①			151,002	0	151,002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51,002	0	151,002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51,002	0	0	151,002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151,002	0	0	151,002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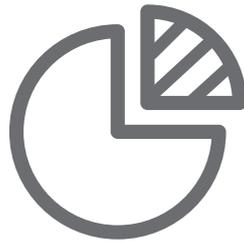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공 주	1,495,806,000원*4.5%=-	67,311	
보 령	1,859,800,000원*4.5%=-	83,691	
합계		151,002	



## I . 세출예산(증추경)

### 3. 행정과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

○ 부서(기관)명 : 행정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학원및교습소관리	60	438	151	685,756	68,494	617,262
2	교육공무직원맞춤형복지	62	132	151	3,507,500	3,174,600	332,900
3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4	353	151	36,988,469	33,978,450	3,010,019
<b>합 계</b>					<b>41,181,725</b>	<b>37,221,544</b>	<b>3,960,181</b>

행정과		정책사업	평생교육
1	<b>학원및교습소관리</b>	단위사업	평생교육활성화지원
기존 ○		세부사업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신규		세세부사업	학원및교습소관리
예산서 438쪽		각 목 151쪽	담당자 주무관 장문선 ☎640-811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써 학원(교습소) 내 감염 확산 방지를 통한 수강생 안전 확보로 학습자 교육여건 보호 및 학부모 불안감 해소
- 사업대상 : 학원 3,061개소, 교습소 803개소, 개인과외교습자 4,333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685,756천원(기정예산 68,494천원 + 추경예산 617,262천원)**
  - ※ 증감사유 : 학원업무통합시스템 기능개편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000천원 증액  
학원·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06,262천원 증액
- 사업내용 : 학원 등 정기·특별 지도점검, 신고포상금제 운영, 연수(학원 업무 담당공무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학원·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 편성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16조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편성근거 :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편성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편성근거 : 2021년도 학원 업무 추진 기본계획[행정과-1776(2021.02.16.)]

**2021년도 학원 업무 추진 기본계획**

-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효율성 제고
  - 사용자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학원담당 청렴및사 교육경감	학원업무 통합 시스템 기능개선	11,000,000원*1식=	11,000	0	11,000	-내용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한 교육지원청과 학원 간 상호 교류 및 의사소통의 효율성 제고 -대상: 학원 3,061개소, 교습소 803개소 -증감사유: 학원업무통합시스템에 자료집계시스템 추가 등의 기능 개편을 통해 행정적 효율성 제고, 사용자 이용 편의 제공 및 운영 활성화 도모
코로나19 대응방역 지원	방역물품	52,300원*3종*3,864개소=	606,262	0	606,262	-내용 ◦학원·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학원 등 방역 강화로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대상: 학원 3,061개소, 교습소 803개소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원·교습소 내 감염 확산을 방지를 통해 학원 수강생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및 학부모 불안감 해소
합계 ①			617,262	0	617,262	
미변동 사업금액 ②			68,494	68,494	0	
총사업비 ③=①+②			685,756	68,494	617,262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685,756	0	0	685,756
기정예산 (B)	0	0	68,494	0	0	68,494
추경증감 (C=A-B)	0	0	617,262	0	0	617,262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3,453	22,080	11,373	66.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행 정 과	<b>교육공무직원맞춤형복지</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2		단 위 사 업	근로자인건비				
기 존 ○		세 부 사 업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신 규		세 세 부 사 업	교육공무직원맞춤형복지				
예산서	132쪽	각 목	151쪽	담당자	주무관	한정운	☎640-8125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육공무직원의 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 및 처우개선
- 사업대상 : 2021. 3. 1.자 기준 재직중인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전임경력 포함)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3,507,500천원(기정예산 3,174,600천원 + 추경예산 332,900천원)**  
 ※증감사유 : 임금교섭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지급단가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9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편성근거 : 2021년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운영 개선계획, 행정과-6850(2020.7.20.)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	1,000원*6,100명*575점=	3,507,500	3,174,600	332,900	-내용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인건비 통합직종+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 -증감사유: 임금교섭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인상 (기본점수 500점 → 550점)
	소계		3,507,500	3,174,600	332,900	
합계 ①			3,507,500	3,174,600	332,9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3,507,500	3,174,600	332,9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507,500	0	0	3,507,500
기정예산 (B)	0	0	3,174,600	0	0	3,174,600
추경증감 (C=A-B)	0	0	332,900	0	0	332,9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30,400	226,787	3,613	98.4%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행정과	<b>운영비재정결함보조</b>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3		단위사업	사학재정지원
기존 ○		세부사업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신규		세세부사업	운영비부족지원
예산서 353쪽	각 목 151쪽	담당자 주무관	신가은 ☎640-813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운영비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사학육성 도모
- 사업대상 : 사립 고·특수·고기(37교)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36,988,469천원(기정예산 33,978,450천원 + 추경예산 3,010,019천원)**
- ※증감사유 : 2021. 3. 1.자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정원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편성으로 운영비재정 결함보조금 소요액 증가로 3,010,019천원 증액
- \* 2021.3.1.자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정원 증: 공동조리교 정원조정 17교, 교무행정사 10교 등
- 사업내용 : 사립학교 고·특수·고기(37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지원
- 편성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편성근거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재정보조)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운영비재정 결함보조	사립고	33,402,636원*1식=	33,402,636	30,392,617	3,010,019	-내용 ·사립 고·특수·고기(37교) 운영비재정결함 보조 -대상: 사립 고·특수·고기(37교) -증감사유: 2021. 3. 1.자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정원 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편성으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증가
합계 ①			33,402,636	30,392,617	3,010,019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3,585,833	3,585,833	0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36,988,469	33,978,450	3,010,019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6,988,469	0	0	36,988,469
기정예산 (B)	0	0	33,978,450	0	0	33,978,450
추경증감 (C=A-B)	0	0	3,010,019	0	0	3,010,019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395,044	20,393,436	1,608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I . 세출예산(증추경)

### 4. 재 무 과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

○ 부서(기관)명 : 재무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정품소프트웨어보급	70	466	153	3,189,447	12,732	3,176,715
2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체계 구축(특교)	72	466	153	109,282	0	109,282
3	관사매입	74	480	153	1,069,000	850,000	219,000
4	토지매입	76	480	153	6,210	0	6,210
5	관사유지관리	78	482	153	419,298	253,062	166,236
6	교육재산측량및감정평가	80	484	154	24,000	21,000	3,000
7	노후건물철거	82	485	154	381,297	265,250	116,047
8	고교 무상교육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84	553	154	258,120	0	258,120
합 계					5,456,654	1,402,044	4,054,610

연번	사 업 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지역 배분	1. 관사매입	86	480	231	7,169,000	1,410,000	5,759,000
	2. 토지매입	88	480	231	1,107,292	140,330	966,962
	3. 관사유지관리	90	482	231	803,433	338,475	464,958
	4. 교육재산측량및감정평가	92	484	231	320,246	296,510	23,736
	5. 울타리밖재산관리	94	484	231	128,568	0	128,568
	6. 노후건물철거	96	485	208	704,286	0	704,286
	7. 폐교재산관리	98	487	208	256,475	202,655	53,820
합 계					10,489,300	2,387,970	8,101,330

재 무 과		<b>정품소프트웨어보급</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1			단 위 사 업	교육행정정보화			
기 존	○		세 부 사 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신 규			세 세 부 사 업	정품소프트웨어보급			
예산서	466쪽	각 목	153쪽	담당자	주무관	이승용	☎640-824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매년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일괄 구입·보급
- 사업대상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체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3,189,447천원(기정예산 12,732천원 + 추경예산 3,176,715천원)**
- ※증감사유 : 12월에 집행가능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서편집과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문서편집 소프트웨어(1,113,707천원), 오피스 소프트웨어(2,057,508천원) 사용권 구매 금액,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 검토를 위한 사업추진경비(5,000천원)와 검토수당(500천원) 증액 필요
- 편성근거 : 저작권법 제46조, 제141조

<p>제46조(저작권의 이용허락) ①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p> <p>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문서편집 SW	1,113,707,000원*1증=	1,113,707	0	1,113,707	-내용 °도교육청 산하기관 대상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비용 °사용기간: 2022. 1. 1. ~ 12. 31.(1년) -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체 -증가사유: 12월에 집행가능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오피스 SW	2,057,508,000원*1증=	2,057,508	0	2,057,508	-내용 °도교육청 산하기관 대상 오피스(표계산, 발표 등)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비용 °사용기간: 2022. 1. 1. ~ 12. 31.(1년) -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체 -증가사유: 12월에 집행가능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검토수당	50,000원*5명*2회=	500	0	500	-내용 °문서편집과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 제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필요 -대상: 외부 전문가 검토위원 5명 -증가사유: 도입가능 소프트웨어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 절감 노력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협의회	20,000원*25명*11회=	5,500	500	5,000	-내용 °문서편집과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 제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필요 -대상: 내·외부 전문가 검토위원 및 관계직원 25명 내외 -증가사유: 도입가능 소프트웨어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 절감 노력
합계 ①			3,177,215	500	3,176,715	
미변동 사업금액 ②			12,232	12,232	0	
총사업비 ③=①+②			3,189,447	12,732	3,176,715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A)	0	0	3,189,447	0	0	3,189,447
기정예산(B)	0	0	12,732	0	0	12,732
추경증감(C=A-B)	0	0	3,176,715	0	0	3,176,715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081,269	3,081,217	52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재 무 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체계 구축(특교)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2			단 위 사 업	교육행정정보화
기 존			세 부 사 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신 규	○		세 세 부 사 업	전산시스템유지관리
예산서	466쪽	각 목	153쪽	담당자 주무관 이승용 ☎640-824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에 따라 교육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구축, 기관별 데이터 역량 제고, 교육데이터 종합관리를 위한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대상 : 전체 교직원
- 사업기간 : 2021. 5. ~ 2021. 12.
- 사업주체 : 교육부(기본계획 수립, 특교 지원), 시도교육청(업무협약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총괄관리)
- 총사업비 : **109,282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109,282천원)**
- 사업내용 : 교육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구축, 기관별 데이터 역량 제고, 교육데이터 종합관리를 위한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도 분담금
- 편성근거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체계 구축 (특교)	분담금	109,282,000원*1기관=	109,282	0	109,282	-내용 ◦ 교육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구축 ◦ 기관별 데이터 역량강화 및 콘텐츠 개발 ◦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상: 전체 교직원 -증감사유: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필요
합계 ①			109,282	0	109,282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09,282	0	109,282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109,282	0	0	0	109,282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109,282	0	0	0	109,282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재 무 과		<b>관사매입</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3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공유재산매입			
예산서	480쪽	각 목	153쪽	담당자	주무관	정덕현	☎640-822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사 매입을 통한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 사업대상 : 당진꿈나래학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고등학교
- 총사업비 : **1,069,000천원(기정예산 850,000천원 + 추경예산 219,000천원)**  
 ※증감사유 : 당진꿈나래학교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위한 관사 매입
- 사업내용 : 당진꿈나래학교 아파트 1세대 매입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 제47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공유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관사매입	당진꿈나래 학교	219,000,000원*1세대	219,000	0	219,000	-내용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원 관사 매입 -대상: 당진꿈나래학교 1세대 -증감사유: 2021.3.1.자 개교 당진꿈나래학교는 교직원공동관사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인근에 관사 확보 필요
	소계		219,000	0	219,000	
합계 ①			219,000	0	219,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850,000	850,000	0	
총사업비 ③=①+②			1,069,000	850,000	219,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069,000	0	0	1,069,000
기정예산 (B)	0	0	850,000	0	0	850,000
추경증감 (C=A-B)	0	0	219,000	0	0	219,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재 무 과		<b>토지매입</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4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공유재산매입			
예산서	480쪽	각 목	153쪽	담당자	주무관	박종성	☎640-822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관 울타리안 점유토지 매입을 통한 문제재산 해소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
- 사업대상 : 직속기관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 총사업비 : **6,210천원(기정예산 0원 + 추경예산 6,210천원)**  
 ※증감사유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울타리 안 점유토지 매입을 위하여 6,210천원 편성
- 사업내용 : 점유토지 매입(90㎡)으로 원아의 자연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 다양한 체험기회의 제공과 소관 재산의 효율적 관리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 제3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토지매입	직속기관	6,210,000원*1필지=	6,210	0	6,210	-내용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매입으로 원아들의 체험활동공간 활용과 효율적 재산관리 -대상: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1필지(약90㎡) -증감사유: 원아의 실외자연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 중인 점유 재산매입을 위하여 6,210천원 편성
	소계		6,210	0	6,210	
합계 ①			6,210	0	6,21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6,210	0	6,21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6,210	0	0	6,21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6,210	0	0	6,21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재 무 과	<b>관사유지관리</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5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관사유지관리
예산서	482쪽	각 목	153쪽	담당자	주무관 정덕현 ☎640-822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사 수선을 통한 건물 내구연한 증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대상 : 직속기관, 고등학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직속기관, 고등학교
- 총사업비 : **419,298천원(기정예산 253,062천원 + 추경예산 166,236천원)**  
 ※증감사유 : 노후 관사 기본시설물 수선을 위하여 기정 예산대비 49,618천원 증액, 임차관사(1세대) 갱신을 위한 보증금 인상분 50,000천원 증액, 본청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구입비 66,618천원 증액
- 사업내용 : 노후 관사 화장실수선(2교), 도배장판(2교), 외벽단열(1교), 지붕방수(1교), 임차관사 보증금 인상분 지급, 본청 교직원 관사(25세대) 내부비품 구입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1항, 제53조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건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li> <li>2. 건물유지 수선비(도배 및 장판 포함),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li> <li>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 이용 관사에 한정함)</li> </ol>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관사수선	공주생명고	29,250,000원*1교=	29,250	19,250	10,000	-내용 *화장실 수선, 도배, 장판 등 기본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 임차기간 갱신 보증금 인상분 반영 및 본청 교직원관사 내부비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대상: 공주생명고(화장실수선), 논산공업고(배관, 외벽단열, 지붕방수 등) 연무대기계공고(화장실수선, 도배, 장판, 등기구) 충남드론항공고(도배장판 교체) 과학교육원(관사 임차료 인상분) 교직원 관사(25세대, 35실) 내부비품 구입
	논산공업고	24,998,000원*1교=	24,998	0	24,998	
	연무대 기계공고	10,000,000원*1교=	10,000	0	10,000	
	충남드론 항공고	4,620,000원*1교=	4,620	0	4,620	
	과학교육원	50,000,000원*1동=	50,000	0	50,000	
	비품구입	716,180원*50종*2회=	71,618	5,000	66,618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소계		190,486	24,250	166,236	-증감사유: 노후관사 수선유지비와 본청 매입·임차 교직원관사 내부비품 구입 지원을 위한 166,236천원 증액
	합계 ①		190,486	24,250	166,236	
	미변동 사업금액 ②		228,812	228,812	0	
	총사업비 ③=①+②		419,298	253,062	166,236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A)	0	0	419,298	0	0	419,298
기정예산(B)	0	0	253,062	0	0	253,062
추경증감(C=A-B)	0	0	166,236	0	0	166,236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88,915	88,595	320	99.6%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재 무 과	<b>교육재산측량및감정평가</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6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교육재산측량및감정평가
예산서	484쪽	각 목	154쪽	담당자	주무관 차기택 ☎640-822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제재산 해소 및 교육재산 매입·매각의 적정성 확보
- 사업대상 : 본청, 고등학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고등학교
- 총사업비 : **24,000천원(기정예산 21,000천원 + 추경예산 3,000천원)**  
 ※증감사유 : 고등학교 토지(2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000천원 증액 반영
- 사업내용 : 매각대상 토지 분할 후 감정평가(2필지) 실시 매각대금 가격산출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교육재산 측량및감정 평가	본청	1,300,000원*10필지=	13,000	10,000	3,000	-내용 ◦천안제일고등학교 토지 매각(천안시중앙도서관)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대상: 천안제일고등학교 -증감사유: 매각예정 토지의 매각대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증액 편성
	소계		13,000	10,000	3,000	
합계 ①			13,000	10,000	3,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11,000	11,000	0	
총사업비 ③=①+②			24,000	21,000	3,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4,000	0	0	24,000
기정예산 (B)	0	0	21,000	0	0	21,000
추경증감 (C=A-B)	0	0	3,000	0	0	3,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45,270	45,262	8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재 무 과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7	<b>노후건물철거</b>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 세 부 사 업	노후건물철거
예산서					485쪽	각 목	154쪽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건물 철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환경 개선
- 사업대상 : 고등학교 4교(창고3동, 숙직실, 씨름장, 온실동)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고등학교
- 총사업비 : **381,297천원(기정예산 265,250천원 + 추경예산 116,047천원)**  
 ※증감사유 : 노후도가 심한 건물 철거를 통한 안전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322,858천원 증액
- 사업내용 : 학교 창고 및 노후건물 철거, 샌드위치패널 건물 철거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노후건물 철거	연무대 기계공고	5,785,000원*1동=	5,785	0	5,785	-내용 ◦창고, 매점, 숙직실, 온실 등 노후가 심한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거 실시 -대상 연무대기계공고 숙직실(37.08㎡) 금산고 씨름장(295.36㎡) 부여고 샌드위치 창고(3동, 111㎡) 한국식품마이스터고 노후온실(577.71㎡) -증감사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건물과 미활용 체육시설, 온실 철거
	금산고	42,946,000원*1동=	42,946	0	42,946	
	부여고	17,316,000원*1동=	17,316	0	17,316	
	한국식품 마이스터고	50,000,000원*1동=	50,000	0	50,000	
	소계		116,047	0	116,047	
합계 ①			116,047	0	116,047	
미변동 사업금액 ②			265,250	265,250	0	
총사업비 ③=①+②			381,297	265,250	116,047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81,297	0	0	381,297
기정예산 (B)	0	0	265,250	0	0	265,250
추경증감 (C=A-B)	0	0	116,047	0	0	116,047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0,000	10,000	0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재 무 과		정 책 사 업	예비비및기타
8	고교 무상교육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단 위 사 업	예비비및기타
기존 ○		세 부 사 업	제지출금등
신규		세세부사업	자치단체보조금반환
예산서 553쪽		각 목 154쪽	담당자 주무관 구혜리 ☎640-823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사업대상 :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117교, 총 19,289명 지원)
- 사업기간 : 2020. 3. ~ 2021. 2.
- 사업주체 : 분청
- 사업비 : 258,12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258,120천원)
- 사업내용 : 고교 무상교육 자치단체 보조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편성근거
  - 도-교육청-의회 간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업무협약
  -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계획」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I.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추진실적
  - 고교 무상교육 보조금(고1학년) 집행액 : 21,570,026천원 (도청 10,785,013천원, 시·군 10,785,013천원)

### < 2020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교부기관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액 합계
총 합 계		21,809,918	21,570,026	239,892	6,961	258,120
광역	충남도청	10,877,407	10,785,013	92,394	0	92,394
기초	기초 합계	10,932,511	10,785,013	147,498	6,961	165,726
	천안시	3,647,473	3,644,303	3,170	0	3,170
	공주시	636,147	626,072	10,075	976	11,051
	보령시	356,220	348,212	8,008	1	8,009
	아산시	1,649,577	1,636,740	12,837	2,575	15,412
	서산시	875,366	859,442	15,924	1,218	17,142
	논산시	757,280	742,928	14,352	2	14,354
	계룡시	259,446	253,587	5,859	308	6,167
	당진시	767,557	761,363	6,194	1	6,195
	금산군	162,476	145,803	16,673	333	17,006
	부여군	220,638	204,576	16,062	343	16,405
	서천군	221,822	229,856	-8,034	0	0
	청양군	113,209	101,268	11,941	221	12,162
	홍성군	595,790	564,014	31,776	865	32,641
	예산군	457,711	451,817	5,894	118	6,012
태안군	211,799	215,032	-3,233	0	0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고교 무상교육 지원	광역	92,394,000원*1회=	92,394	0	92,394	- 내용 ° 2020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1학년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 반납액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증감사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후 집행잔액 발생
	기초	165,726,000원*1회=	165,726	0	165,726	
	소계		258,120	0	258,120	
합계 ①			258,120	0	258,12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258,120	0	258,12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6,961	251,159	0	258,12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6,961	251,159	0	258,12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078,583	1,078,382	201	99.9%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재 무 과	<b>관사매입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지역배분 1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공유재산매입
예산서 480쪽	각 목 231쪽	담당자 주무관 정덕현	☎640-822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직원 공동관사 매입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대상 : 교육지원청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보령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7,169,000천원(기정예산 1,410,000천원 + 추경예산 5,759,000천원)**  
 ※증감사유 : 장거리 출퇴근 또는 전·월세 거주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관사 매입비 5,759,000천원(48세대) 증액 편성
- 사업내용 : 보령교육지원청(9세대), 부여교육지원청(7세대) 아파트 매입, 논산계룡교육지원청(20세대), 청양교육지원청(12세대) 원룸형(1인 가구형) 매입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 제47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공유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관사매입	교육지원청	132,759,250원*54세대	7,169,000	1,410,000	5,759,000	-내용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의 근무지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관사 매입 -대상: 보령교육지원청(9세대) 논산계룡교육지원청(20세대) 부여교육지원청(7세대) 청양교육지원청(12세대) -증감사유: 기존 서산(6세대) → 보령(9세대), 논산계룡(20세대), 부여(7세대), 청양(12세대) 총 48세대 증가로 5,759,000천원 증액
	소계		7,169,000	1,410,000	5,759,000	
합계 ①			7,169,000	1,410,000	5,759,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7,169,000	1,410,000	5,759,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7,169,000	0	0	7,169,000
기정예산 (B)	0	0	1,410,000	0	0	1,410,000
추경증감 (C=A-B)	0	0	5,759,000	0	0	5,759,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67,070	167,070	0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식	금액	비고
보령	200,000,000원*9세대=	1,800,000	
논산계룡	63,000,000원*20세대=	1,260,000	
부여	200,000,000원*7세대=	1,400,000	
청양	108,250,000원*12세대=	1,299,000	
합계		5,759,000	

재 무 과	<b>토지매입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지역배분 2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공유재산매입
예산서 480쪽	각 목 231쪽	담당자 주무관 박종성 ☎640-822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유재산 매입을 통한 문제재산과 민원 해결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
- 사업대상 : 교육지원청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옥계초등학교 외 7개 기관
- 총사업비 : **1,107,292천원(기정예산 140,330천원 + 추경예산 966,962천원)**  
 ※증감사유 : 학교점유 사유지 매입, 상호점유 토지 교환, 안전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116,962천원 증액, 학생 증가에 따른 교지 추가확보를 위한 850,000천원 편성
- 사업내용 : 학교점유 사유지 매입(4건, 302㎡), 상호점유 사유지 교환(1건, 4㎡), 학생승하차구역 조성 및 진입도로(2건, 303㎡) 매입, 성연초 교지추가 확보(1,001㎡)를 위한 966,962천원 증액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 제3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토지매입	교육지원청	1,107,292,000원=	1,107,292	140,330	966,962	-내용 ◦학교 점유 사유지 매입으로 민원 해소, 상호 점유 사유지 교환으로 문제재산 해결 ◦학교, 기관 진입도로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 및 재산관리 효율화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지 추가로 미래 교육 수요 대비 -대상: 점유사유지 : 월전초, 인지초, 용문초, 흥성여중 사유지교환 : 보령 옥계초-천북중 통학로, 진입로 :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합덕초 교지추가 확보 : 서산 성연초 -증감사유: 학교점유 사유지 매입으로 민원해소와 안전한 진입로 확보, 학생수 증가로 교지 추가확보를 위하여 총 8필지(1,610㎡) 토지매입
	소계		1,107,292	140,330	966,962	
합계 ①			1,107,292	140,330	966,962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107,292	140,330	966,962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107,292	0	0	1,107,292
기정예산 (B)	0	0	140,330	0	0	140,330
추경증감 (C=A-B)	0	0	966,962	0	0	966,962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561,041	529,956	31,085	94.5%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보 령	2,383,500원*2필지=	4,767	월전초(101㎡), 옥계초(4㎡)
서 산	14,520,000원*1필지=	14,520	인지초(66㎡)
	850,000,000원*1필지=	850,000	성연초(1,001㎡)
당 진	23,650,000원*1필지=	23,650	합덕초(43㎡)
금 산	8,025,000원*1필지=	8,025	용문초(75㎡)
서 천	39,000,000원*1필지=	39,000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260㎡)
홍 성	27,000,000원*1필지	27,000	홍성여자중(60㎡)
합계		966,962	8필지(1,610㎡)

재 무 과	<b>관사유지관리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지역배분 3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관사유지관리
예산서 482쪽	각 목 231쪽	담당자 주무관 정덕현	☎640-822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사 시설 수선을 통한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도모
- 사업대상 : 교육지원청(관할 학교 포함) 단독·공동관사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803,433천원(기정예산 338,475천원 + 추경예산 464,958천원)**  
 ※증감사유 : 관사의 노후화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867천원 증액,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비 334,091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초등학교 7교(75,965천원), 중학교 2교(14,173천원), 교육지원청 2개 기관(40,729천원)의 노후관사 화장실 수선, 도배·장판, 옥상방수, 창호교체, 외벽단열 등 시설수선과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334,091천원) 지원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 제53조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도배 및 장판 포함),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정함)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관사유지 관리	교육지원청	33,524,420원*14지역=	469,342	338,475	130,867	-내용 ◦건축년도 경과 노후 관사에 대한 시설물 수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사용자 근무여건 개선 ◦교직원관사 내부비품 구입 지원 -대상: 광명초외 8교 교육지원청 공동관사 2개동 수선 교직원 관사(10개지역 공동이용 관사) -증감사유: 시설수선을 통한 건물의 내구연한 증대 130,867천원 증액, 11개지역 내부비품 구입비 334,091천원 편성
	내부비품	233,460원*1,431중=	334,091	0	334,091	
	소계		803,433	338,475	464,958	
합계 ①			803,433	338,475	464,958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803,433	338,475	464,958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계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경정예산 (A)	0	0	803,433	0	0	803,433
기정예산 (B)	0	0	338,475	0	0	338,475
추경증감 (C=A-B)	0	0	464,958	0	0	464,958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368,401	1,366,753	1,648	99.9%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보령	22,000,000원*1교=	22,000	광명초
아산	8,965,000원*1교=	8,965	염티초
논산계룡	5,910,000원*1교=	5,910	논산여중
당진	4,996,000원*2교=	9,992	기관단독, 송산중
부여	5,000,000원*1교=	5,000	석양초
서천	19,500,000원*2교=	39,000	기관공동·단독
청양	15,000,000원*2교=	30,000	장평초, 합천초
예산	1,000,000원*1교=	1,000	봉산초
태안	9,000,000원*1교=	9,000	이원초
보령	369,510원*99종=	36,582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서산	220,130원*79종=	17,391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논산계룡	1,576,660원*6종=	9,460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당진	150,000원*240종=	36,000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금산	269,000원*189종=	50,841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부여	205,250원*16종=	3,284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서천	247,740원*171종=	42,364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청양	209,720원*230종=	48,236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홍성	255,140원*77종=	19,646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예산	266,720원*99종=	26,406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태안	256,610원*171종=	43,881	교직원 관사 내부비품
합계		464,958	

재 무 과	<b>교육재산측량및감정평가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지역배분 4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교육재산측량및감정평가
예산서 484쪽	각 목 231쪽	담당자 주무관 정덕현	☎640-822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제재산 해소 및 교육재산 매입·매각의 적정성 확보
- 사업대상 : 교육지원청(관할 학교 포함)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320,246천원(기정예산 296,510천원 + 추경예산 23,736천원)**  
 ※증감사유 : 점유·피점유 문제재산에 대한 해소 추진과 매각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기정예산 대비 23,736천원 증액
- 사업내용 : 보령(월전초 외 1교), 당진(당진중 외 3교), 서천(미래교육원) 등 경계측량과 감정평가 실시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교육재산 측량및감정 평가	각종수수료	22,874,710원*14기관=	320,246	296,510	23,736	-내용 °소관 재산 인접 점유·피점유 문제재산에 대한 해소와 매각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 - 대상: 보령 월전초 외 1교, 당진중외 3교, 서천미래교육원, 태안 교육시설 경계측량 실시 -증감사유: 경계·분할측량, 감정평가실시에 따른 납부 예정 수수료 23,736천원 증액
	소계		320,246	296,510	23,736	
합계 ①			320,246	296,510	23,736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320,246	296,510	23,736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20,246	0	0	320,246
기정예산 (B)	0	0	296,510	0	0	296,510
추경증감 (C=A-B)	0	0	23,736	0	0	23,736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88,400	379,875	8,525	97.8%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보 령	900,000원*5필지=	4,500	
당 진	2,309,000원*4필지=	9,236	
서 천	1,000,000원*5필지=	5,000	
태 안	1,000,000원*5필지=	5,000	
합계		23,736	

재 무 과	<b>울타리밖재산관리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지역배분 5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					세 세부사업	교육재산측량및감정평가
예산서 484쪽	각 목 231쪽	담당자 주무관 정덕현	☎640-822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및 재산관리의 적정성 확보
- 사업대상 : 교육지원청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보령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128,568천원(기정예산 0원 + 추경예산 128,568천원)**  
 ※증감사유 : 보령교육지원청 울타리 밖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 정비와 유지관리비 128,568천원 편성
- 사업내용 : 보령시 동대동 4-4외 50필지(33,714㎡)의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토지 정비와 미활용 노후건물 철거, 울타리, CCTV 설치 등 유지관리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울타리밖 재산관리	가게근로 자인건비	80,110원*2명*35일=	5,608	0	5,608	-내용 ◦보령시 동대동 4-4외 50필지의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토지 정비, 건물철거와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 - 대상: 동대동 4-4외 50필지(33,317㎡) -증감사유: 해당 토지의 제초작업, 잡목제거, 무단 점유 물건 철거(3개동)와 무단적치 등 방지를 위한 울타리(110m)설치, CCTV 설치비 128,568천원 편성
	시설장비 유지비	500,000원*6종*13회=	39,000	0	39,000	
	자산 철거비	27,986,330원*3동=	83,960	0	83,960	
	소계		128,568	0	128,568	
<b>합계 ①</b>			128,568	0	128,568	
<b>미변동 사업금액 ②</b>			0	0	0	
<b>총사업비 ③=①+②</b>			128,568	0	128,568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28,568	0	0	128,568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128,568	0	0	128,568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88,400	379,875	8,525	97.8%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보 령	128,568,000원*1기관=	128,568	
합계		128,568	

재 무 과	<b>노후건물철거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지역배분 6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노후건물철거
예산서 485쪽	각 목 208쪽	담당자 주무관 정덕현	☎640-822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건물 철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대상 : 교육지원청(관할 학교 포함), 노후 건물(창고, 관사, 기숙사), 폐교 건물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704,286천원(기정예산 0원 + 추경예산 704,286천원)**  
 ※증감사유 :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 창고, 관사, 폐교 건물 등에 대한 철거비 665,343천원 편성, 노후 건물 한내여중 청지관, 주포학생야영장 본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8,943천원 편성
- 사업내용 : 폐교 3교(봉현분교, 대울초, 광시초) 노후 교사동 및 부속건물 총 25동, 관사 6교(광석초, 강경 황산초, 전대초, 남일초, 송림초, 태안중), 창고 1교(성신초), 돌봄교실 1교(목천초), 주포학생 야영장 노후 건물 철거, 정밀안전진단(한내여중 1동, 주포학생야영장 1동)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

①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노후건물 철거	노후건물 철거	54,175,840원*13교=	704,286	0	704,286	-내용 ◦노후 창고, 관사, 폐교 건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학교환경 및 자체활용 공간 조성을 위한 노후건물 철거 -대상: ◦목천초 외 8교(8동), 폐교 3교(25동), 주포학생 야영장 철거, 한내여중(청지관), 주포학생야영장(본동) 정밀안전진단 -증감사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확보 및 학교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철거비 665,343천원, 한내여중, 주포학생야영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8,943천원 편성
	소계		704,286	0	704,286	
합계 ①			704,286	0	704,286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704,286	0	704,286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704,286	0	0	704,286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704,286	0	0	704,286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485,010	483,559	1,451	99.7%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천 안	5,928,000원*2교=	11,856	목천초(1동), 성신초(1동)
공 주	23,408,250원*8동=	187,266	구)우성초 봉현분교(8동)
보 령	18,031,000원*1교=	18,031	한내여자중학교(정밀안전진단)
	20,912,000원*1교=	20,912	주포학생야영장(정밀안전진단)
	38,739,600원*5동=	193,698	주포학생야영장(5동)
논 산	9,325,000원*2교=	18,649	광석초(1동), 강경황산초(1동)
당 진	7,000,000원*1교=	7,000	전대초(1동)
금 산	15,520,000원*1교=	15,520	남일초(1동)
서 천	4,521,000원*1교=	4,521	송림초(1동)
예 산	12,903,000원*17동=	219,345	구)대울초(6동), 구)광시초(11동)
태 안	7,488,000원*1교=	7,488	태안중(1동)
합계		704,286	

재 무 과	<b>폐교재산관리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지역배분 7					단 위 사 업	재무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폐교재산관리
예산서 487쪽	각 목 208쪽	담당자 주무관 최호숙	☎640-8222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폐교재산의 효율적 유지보수와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사업대상 : 교육지원청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256,475천원(기정예산 202,655천원 + 추경예산 53,820천원)**  
 ※증감사유 : 폐교재산의 안전점검실시와 안전시설 설치, 2021. 3. 1.자 폐교(원북초 방갈분교)에 따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3,82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점검(천안 봉성초), 배수시설 개선(부적초부남분교), 무인경비(당진 도성초), 소방설비수선(금남초, 복수초), 원북초 방갈분교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제2항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폐교재산 관리	시설장비유지	7,358,330원*12개지역=	88,300	59,364	28,936	-내용 ◦폐교재산의 안전적인 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선, 무인경비, 소방설비 수선 등 실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수립 - 대상: 구.봉성초 외 5개교 -증감사유: 정밀안전진단, 시설수선비, 무인경비 등 신규 폐교재산 발생에 따른 53,820천원 증액
	관리용역비	4,616,160원*12개지역=	55,394	52,694	2,700	
	기관차인건비	4,063,080원*11개지역=	44,694	41,810	2,884	
	전기요금	1,433,370원*8개지역=	11,467	10,467	1,000	
	사전조사비용	19,150,000원*2교=	38,300	20000	18,300	
	소계		238,155	184,335	53,820	
	합계 ①		238,155	184,335	53,820	
	미변동 사업금액 ②		18,320	18,320	0	
	총사업비 ③=①+②		256,475	202,655	53,82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56,475	0	0	256,475
기정예산 (B)	0	0	202,655	0	0	202,655
추경증감 (C=A-B)	0	0	53,820	0	0	53,82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60,647	258,606	2,041	99.2%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천 안	18,300,000원*1교=	18,300	
논 산 계 룡	22,936,000원*1교=	22,936	
당 진	3,884,000원*1교=	3,884	
금 산	2,000,000원*2교=	4,000	
태 안	4,700,000원*1교=	4,700	
합계		53,820	



## I . 세출예산(증추경)

### 5. 시설과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

○ 부서(기관)명 : 시설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교사개축	104	414	155	236,220	0	236,220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06	499	155	29,020	10,620	18,400
3	설계공모심사위원회	108	500	155	68,540	18,000	50,540
합 계					333,780	28,620	305,160

연번	사업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지역 배분	1. 기타시설	110	415	205	3,930,000	0	3,930,000
	2. 분필철판교체	112	416	205	5,078,000	0	5,078,000
합 계					9,008,000	0	9,008,000

시 설 과		<b>교사개축</b>	정 책 사 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			단 위 사 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 존	○		세 부 사 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 규			세세부사업	교사개축			
예산서	414쪽	각 목	155쪽	담당자	주무관	양선호	☎640-8336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위험시설(D등급) 개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대상 : 금산산업고(2동 교사)
- 사업기간 : 2021. 07.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236,22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236,220천원)**  
 ※증감사유 : 사업 주체 변경(당초 금산교육지원청 → 변경 시설과)
- 사업내용 : 2동 교사 개축을 통한 재난위험시설 해소
- 편성근거 : 교육부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제출된 해소계획에 따라 교사 개축비 및 실시설계비 반영으로 위험요인 제거 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조성</li> <li>금산산업고 : 2021년 공간혁신사업과 연계한 실시설계 추진으로 설계비 반영</li> <li>- (주요변경사항) 재난위험시설 교사개축에 따른 증액</li> <li>- (사업기간) 2021. 04. ~ 2022. 01.</li> </ul>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재난위험 시설	금산산업고	설계비	5,519,825,000원*4.28%=-	236,220	0	236,220	-내용: 재난위험시설(D등급) 개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대상: 금산산업고(2동 교사) -증감사유: 사업 주체 변경 (당초 금산교육지원청 → 변경 시설과)
	소계			236,220	0	236,220	
합계 ①				236,220	0	236,22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236,220	0	236,22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36,220	0	0	236,22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236,220	0	0	236,22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시 설 과	<b>공공건축심의위원회</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2					단 위 사 업	시설사업관리
기 존					세 부 사 업	시설사업관리
신 규					○	세 세 부 사 업
예산서	499쪽	각 목	155쪽	담당자	주무관	허옥 ☎640-832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건축 사업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건축 기획업무·사업계획 사전 심의
- 사업대상 : 공공건축사업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사업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29,020천원(기정예산 10,620천원 + 추경예산 18,400천원)**  
 ※증감사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확대로 공공건축심의 대상 건수 증가(당초 12건 → 변경 20건)
- 사업내용 : 공공건축 심의 대상사업 사전 건축 기획 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편성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3,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	일반수용비	20,000원*5종*8회=	800	300	500	-내용: 공공건축 심의 대상사업 사전 건축 기획업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전 검토 및 심의 -대상: 공공건축사업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사업 -증감사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확대로 공공 건축심의 대상 건수 증가(당초 12건 → 변경 20건)
	위원수당	100,000원*5명*37회=	18,340	6,000	12,340	
	검토수당	50,000원*5명*32회=	8,000	3,000	5,000	
	협의회	20,000원*5명*12회=	1,160	600	560	
소계			28,300	9,900	18,400	
합계 ①			28,300	9,900	18,40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720	720	0	※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29,020	10,620	18,400	

※ 2021.3.1.자 기능개편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 2,430천원 예산이체 【안전총괄과→시설과】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9,020	0	0	29,020
기정예산 (B)	0	0	10,620	0	0	10,620
추경증감 (C=A-B)	0	0	18,400	0	0	18,4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시 설 과	<b>설계공모심사위원회</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3					단 위 사 업	시설사업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시설사업관리
신 규					세 세 부 사 업	설계공모심사위원회운영
예산서	500쪽	각 목	155쪽	담당자	주무관	양선호 ☎640-836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축사의 폭넓은 참여 확대를 통한 우수한 작품 선정과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사업대상 : 설계비 1억원 이상 설계용역(신축공사, 학교단위 감성꿈틀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68,540천원(기정예산 18,000천원 + 추경예산 50,540천원)**  
 ※증감사유 :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공모 심사 대상 35건 증가(당초 14회 → 변경 44회)
- 사업내용 :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비 1억원 이상 건축물에 대해 공모방식 적용
- 편성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 운영	위원수당	100,000원*9명*49회=	44,100	12,600	31,500	-내용: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 -대상: 총 44건(신축공사 설계 5건, 학교단위 감성꿈틀 사업 설계 4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35건) -증감사유: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공모 심사 대상 35건 증가로 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 (당초 14회 → 변경 44회)
	검토수당	50,000원*9명*44회=	19,800	3,960	15,840	
	협의회	20,000원*9명*26회=	4,640	1,440	3,200	
	소계		68,540	18,000	50,540	
합계 ①			68,540	18,000	50,54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68,540	18,000	50,54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68,540	0	0	68,540
기정예산 (B)	0	0	18,000	0	0	18,000
추경증감 (C=A-B)	0	0	50,540	0	0	50,54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8,000	18,000	0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시 설 과	<b>기타시설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1		단 위 사 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 존		세 부 사 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 규 ○		세세부사업	기타시설
예산서 쪽	각 목 쪽	담당자	주무관 오진석 ☎640-831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등 1학년 교실을 학습·돌봄 생활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혁신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 사업대상 : 천안청당초 외 74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학교
- 총사업비 : **3,930,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3,930,000천원)**  
 ※증감사유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항목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증액 편성('22년 완성)
- 사업내용 : 초등 1학년 기존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개선
- 편성근거 : 교육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

교육부는 기존 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바닥난방, 교실 내 개수대, 실내인테리어 개선 등·1학년 교실 50% 우선 목표)으로 혁신하고자 교육정책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1학년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함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초등 1학년 교실 환경개선	시설비	30,000,000원*131실=	3,930,000	0	3,930,000	-내용: 초등 1학년 기존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개선(냉바닥개선, 개수대 설치, 실내환경개선 등) -대상: 천안청당초 외 74교(1실당 30,000천원) -증감사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항목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신규 편성('22년 완성)
	소계		3,930,000	0	3,930,000	
합계 ①			3,930,000	0	3,930,00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3,930,000	0	3,930,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930,000	0	0	3,930,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3,930,000	0	0	3,930,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천 안	30,000,000원*34실=	1,020,000	
공 주	30,000,000원*11실=	330,000	
보 령	30,000,000원*12실=	360,000	
아 산	30,000,000원*15실=	450,000	
서 산	30,000,000원*3실=	90,000	
논 산 계 룡	30,000,000원*8실=	240,000	
당 진	30,000,000원*8실=	240,000	
금 산	30,000,000원*6실=	180,000	
부 여	30,000,000원*4실=	120,000	
서 천	30,000,000원*5실=	150,000	
청 양	30,000,000원*3실=	90,000	
홍 성	30,000,000원*7실=	210,000	
예 산	30,000,000원*9실=	270,000	
태 안	30,000,000원*6실=	180,000	
합계		3,930,000	

시 설 과	<b>분필칠판교체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역배분 2		단 위 사 업	학교운영비지원
기 존		세 부 사 업	학교운영비지원
신 규 ○		세세부사업	교실내부비품지원
예산서 쪽	각 목 쪽	담당자	주무관 최태영 ☎640-83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필칠판을 신속히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교 일반교실 내 분필칠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학교
- 총사업비 : **5,078,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5,078,000천원)**  
 ※증감사유 :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분필칠판교체 사업비 확보('21년 1,382실)
- 사업내용 : 분필칠판을 수용성 칠판으로 교체
- 편성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

제30조의9(시설·설비·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분필칠판 교체	공립초	2,000,000원*2,539실=	5,078,000	0	5,078,000	-내용: 분필칠판을 수용성 칠판으로 교체 -대상: 초·중·고등학교 일반교실 내 분필칠판 -증감사유: 교육부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분필칠판교체 사업비 확보('21년 1,382실)
	소계		5,078,000	0	5,078,000	
합계 ①			5,078,000	0	5,078,00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5,078,000	0	5,078,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5,078,000	0	0	5,078,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5,078,000	0	0	5,078,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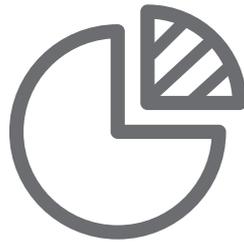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천 안	1,157,784,000원×1식=	1,157,784	392실
공 주	383,390,000원×1식=	383,390	81실
보 령	268,626,000원×1식=	268,626	105실
아 산	593,618,000원×1식=	593,618	106실
서 산	381,866,000원×1식=	381,866	83실
논 산 계 룡	593,618,000원×1식=	593,618	219실
당 진	336,164,000원×1식=	336,164	107실
금 산	147,770,000원×1식=	147,770	27실
부 여	266,087,000원×1식=	266,087	44실
서 천	177,222,000원×1식=	177,222	54실
청 양	77,693,000원×1식=	77,693	18실
홍 성	287,415,000원×1식=	287,415	57실
예 산	245,267,000원×1식=	245,267	41실
태 안	161,480,000원×1식=	161,480	48실
합계		5,078,000	1,382실



## I . 세출예산(증추경)

# 6. 안전총괄과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

○ 부서(기관)명 : 안전총괄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학교안전공제회기금지원	118	153	157	1,036,485	1,000,000	36,485
2	외부환경개선	120	396	157	306,699	0	306,699
3	안전관리시스템	122	412	157	33,220	0	33,220
4	교통안전시설개선	124	426	157	2,200,000	600,000	1,600,000
5	교실형안전체험관 구축	126	471	158	300,000	0	300,000
6 (성립전)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특교)	128	471	158	118,600	89,000	29,600
7	미세먼지대응시설	130	471	158	307,500	0	307,500
8	내진자문기술지원단	132	499	159	24,750	16,500	8,250
9	교육시설안전인증	134	500	159	84,000	0	84,000
<b>합 계</b>					<b>4,411,254</b>	<b>1,705,500</b>	<b>2,705,754</b>

연번	사 업 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지역 배분	1. 교사개축	136	414	229	9,464,654	10,993,585	-1,528,931
	2. 다목적강당수선	138	429	295	50,224	0	50,224
	3. 안전시설	140	427	265	198,868	0	198,868
	4. 어린이놀이시설개선	142	412	205	59,400	7,920	51,480
	5. 외부환경개선	144	397	202	1,707,343	0	1,707,343
	6. 전기시설개선	148	383	274	54,815	0	54,815
	7. 내진보강	150	392	202	13,898,422	8,659,885	5,238,537
	8. 기타시설	152	422	276	288,099	0	288,099
	9. 유류난방기 교체	154	377	200	956,980	0	956,980
<b>합 계</b>					<b>26,678,805</b>	<b>19,661,390</b>	<b>7,017,415</b>

안전총괄과		<b>학교안전공제회기금지원</b>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1			단위사업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기존	○		세부사업	교직원복지지원
신규			세세부사업	학교안전공제회운영
예산서	153쪽	각 목	157쪽	담당자 주무관 장금례 ☎640-84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
- 사업대상 : 학생 (초, 중, 고)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 총사업비 : **1,036,485천원(기정예산 1,000,000천원 + 추경예산 36,485천원)**  
 ※증감사유 :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지원을 위해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지원
- 사업내용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
- 편성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학교안전공제회	법정부담금	1,036,485,000원*1기관=	1,036,485	1,000,000	36,485	-내용: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대상: 학생(초,중,고) -증감사유: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지원을 위해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으로 지원
합계 ①			1,036,485	1,000,000	36,485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036,485	1,000,000	36,485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000,000	0	36,485	1,036,485
기정예산 (B)	0	0	1,000,000	0	0	1,000,000
추경증감 (C=A-B)	0	0	0	0	36,485	36,485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079,606	1,079,606	0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 전 총 괄 과	<b>외부환경개선</b>				정 책 사 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					단 위 사 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 존					세 부 사 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 규					○	세세부사업
예산서	396쪽	각 목	157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640-84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020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외부환경 시설개선으로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 사업대상
  - (피해복구) 송남초 외 2개 학교
- 사업기간 : 2021. 7. ~ 2022. 12.
- 사업주체
  - (피해복구) 송남초 외 2개교 및 충청남도아산·홍성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306,699천원(기정예산 0천원+ 추경예산 306,699천원)**
- 사업내용 : 배수로(콘크리트) 등
- 편성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배수로 (콘크리트)	송남초	시설비	329,000원*145m=	47,550	0	47,550	-내용 °2020년 호우 피해학교 배수로 복구
	홍성여고	시설비	329,000원*193m=	63,400	0	63,400	
	소계			110,950	0	110,950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시설비					
포장(아스콘)	홍성여고	시설비	68,000원*1,523㎡=	103,500	0	103,500	-내용 ◦ 2020년 호우 피해학교 포장 복구
우레탄 농구장	송남초	시설비	138,000원*411㎡=	56,700	0	56,700	-내용 ◦ 2020년 집중호우 농구장 피해 복구
담장(디자인웬스)	송남초	시설비	204,000원*102m=	20,790	0	20,790	-내용 ◦ 2020년 집중호우 담장 피해 복구
마사토 운동장	모산중	시설비	32,000원*200㎡=	6,380	0	6,380	-내용 ◦ 2020년 집중호우 운동장 피해 복구
포장(블럭)	모산중	시설비	75,000원*112㎡=	8,379	0	8,379	-내용 ◦ 2020년 집중호우 포장 피해 복구
합계 ①				306,699	0	306,699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306,699	0	306,699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A)	0	306,699		0	0	306,699
기정예산(B)	0	0	0	0	0	0
추경증감(C=A-B)	0	306,699	0	0	0	306,699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전총괄과		<h1>안전관리시스템</h1>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존	○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규			세세부사업	어린이놀이시설개선			
예산서	412쪽	각 목	157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640-84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시설이용자(어린이, 학부모)에게 실시간 안전관리 정보 제공
- 사업대상 : 안전총괄과, 13개 지역 사립유치원(110개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안전총괄과
- 총사업비 : **33,220천원(기정예산 0천원+ 추경예산 33,220천원)**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도입 지원
- 편성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안전관리 시스템	소프트 웨어	33,220,000원*1식=	33,220	0	33,220	-내용 ◦본청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각 지역 사립유치원 시스템 자료입력 및 놀이 시설별 QR코드제작 지원 포함 ◦2020년 본예산 지역교육지원청 구축  -증감사유: 본청 안전관리시스템 도입과 사립유치원 개별 안전관리 위탁용역비(33,220천원 증액)
합계 ①			33,220	0	33,22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33,220	0	33,22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3,220	0	0	33,22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33,220	0	0	33,22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전총괄과		<b>교통안전시설개선</b>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존	○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규			세세부사업	안전시설			
예산서	426쪽	각 목	157쪽	담당자	주무관	김성광	☎640-841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을 통한 학생 교통안전사고 예방
- 사업대상 : 유·초·특수학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충청남도청
- 총사업비 : **2,200,000천원(기정예산 600,000천원 + 추경예산 1,600,000천원)**  
 ※증감사유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지자체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600,000천원 증액
- 사업내용 : 유·초·특수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용이 시설 설치비 지원(지자체 전출)
- 편성근거 :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추진방향 안내(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1117, 2021.2.4.)

교육부, 교통안전관련 사업 추진 안내 <input type="checkbox"/> 추진배경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19.9.), 통학버스 사망사고(태호·유찬이, '19.5.) 등의 발생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 * '13년 ~'18년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55명, 보호구역 내 사망자 연평균 6명 - 이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강화 등 대책 추진 필요 * 무인단속장비, 신호기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등 어린이 식별 용이 시설 확충 등 <input type="checkbox"/> 2021년 교통안전 관련 추진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 설치 ※ 2021년 사업 물량 8,227대(총액 24,453백만원) ○ (식별용이시설 설치)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사업 추진 ※ 시도교육청 미설치 현황에 따라 차등 배분('21년 900개교, 9,000백만원)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교통안전 시설개선	충청남도청	2,200,000,000원*1기관=	2,200,000	600,000	1,600,000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지자체 전출) -대상: 무인교통단속장비- 1,600,000천원 교육부 교부 (특교 50%, 보통교부금 50%)으로 지자체 지원 -증감사유: 교육부 특교, 보통교부금에 따른 증액
합계 ①			2,200,000	600,000	1,600,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2,200,000	600,000	1,600,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800,000	1,400,000	0	0	2,200,000
기정예산 (B)	0	0	600,000	0	0	600,000
추경증감 (C=A-B)	0	800,000	800,000	0	0	1,600,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045,200	1,045,200	0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전총괄과		<b>교실형안전체험관 구축</b>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5			단위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
기존			세부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신규	○		세세부사업	안전관리
예산서	471쪽	각 목	158쪽	담당자 주무관 장금례 ☎640-84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소 마련으로 학생들의 재난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
- \*7대 표준안: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신변안전, 약물안전, 인터넷 증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사업대상 : 학생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학교
- 총사업비 : **300,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300,000천원)**  
 ※증감사유: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교 내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실형안전체험관 구축
- 사업내용 : 교실형안전체험관 구축(2교)
- 편성근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교실형 안전 체험관 구축	시설비	100,000,000원*2교=	200,000	0	200,000	-내용: 학생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유휴교실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장소 마련 -대상: 학생 -증감사유: 학교 내 교실형 안전체험관 구축(2교)
	비품구입	50,000,000원*2교=	100,000	0	100,000	
	소계		300,000	0	300,000	
합계 ①			300,000	0	300,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300,000	0	300,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00,000	0	0	300,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300,000	0	0	300,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 전 총 괄 과	<b>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특교)</b> <b>(성립전)</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6		단 위 사 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
기 존 ○		세 부 사 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안전관리
예산서 471쪽	각 목 158쪽	담당자 주무관	장금례 ☎640-841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험중심형 어린이 재난훈련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현장 재난대응력 향상
- 사업대상 : 관내 20개교
-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 사업주체 : 충청남도교육청
- 총사업비 : **118,600천원(기정예산 89,000천원 + 추경예산 29,600천원)**
- 사업내용 : 재난훈련프로그램 학교 운영경비 지원 및 전문가 자문수당 지원
- 편성근거
  - 2021년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학교안전및학생건강) 지원 계획 통보(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4533(2020.9.11.))
  - 2021년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학교안전및학생건강) 지원 및 분배확정 통지(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1586(2021.2.19.))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운영지원 (특교)	학교회계 전출금	1,310,000원*20교=	26,200	15,000	11,200	-내용 ◦행안부 주관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훈련 사업으로 재난대비와 안전문화 확산 -증감사유: 운영비와 자문수당 추가지원
	위원수당	100,000원*3회*3명*20교=	18,400	0	18,400	
합계 ①			44,600	15,000	29,6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74,000	74,000	0	
총사업비 ③=①+②			118,600	89,000	29,6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118,600	0	0	0	118,600
기정예산 (B)	0	89,000	0	0	0	89,000
추경증감 (C=A-B)	0	29,600	0	0	0	29,6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95,500	95,087	413	99.5%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 전 총 괄 과	<h1>미세먼지대응시설</h1>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7		단 위 사 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
기 존		세 부 사 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재난관리
예산서 471쪽	각 목 158쪽	담당자 주무관	신청번호 ☎640-841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력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대상 : 2021.3.1.자 신설 단설유·초·특수학교 및 사립유치원(기설치교 제외)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학교(유치원)
- 총사업비 : **307,5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307,500천원)**  
 ※증감사유 : 2021.3.1.자 신설 단설유·초·특수학교 및 사립유치원 미세먼지 대응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알림판, 신호등 설치비 지원
- 편성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미세먼지 신호등	공립유	10,000,000원*1개원=	10,000	0	10,000	-내용: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지원 -대상: 아산월천유, 대덕초, 당진꿈나래학교 -증감사유: 2021.3.1.자 신설된 단설유, 초, 특수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지원 (*19.12월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인 충남 북부권역과 화력발전소설치 인근지역 단설유, 초, 특수학교에 신호등 설치비를 지원)
	공립초	10,000,000원*1교=	10,000	0	10,000	
	공립특수	10,000,000원*1교=	10,000	0	10,000	
	소계		30,000	0	30,000	
미세먼지 알림판	공립유	2,500,000원*1개원=	2,500	0	2,500	-내용: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비 지원 -대상: 사립유, 아산월천유, 대덕초, 당진꿈나래학교 -증감사유: 2021.3.1.자 신설 단설유, 초, 특수학교와 사립유치원(기설치교 제외)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비 지원 (*19.12월 단설유, 초, 특수학교 전체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비 지원)
	공립초	2,500,000원*1교=	2,500	0	2,500	
	공립특수	2,500,000원*1교=	2,500	0	2,500	
	사립유	2,500,000원*108개원=	270,000	0	270,000	
	소계		277,500	0	277,500	
합계 ①			307,500	0	307,5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307,500	0	307,5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07,500	0	0	307,5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307,500	0	0	307,5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 전 총 괄 과		<b>내진자문기술지원단</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8			단 위 사 업	시설사업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시설사업관리			
신 규			세세부사업	시설관련자문위원회운영			
예산서	499쪽	각 목	159쪽	담당자	공업6급	최진만	☎640-8432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구조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내진·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성, 내진성능, 시공성, 경제성 등 안전한 교육시설 확보
- 내진·특수구조 자문 및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내실화

###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내진보강사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규정을 적용받는 학교시설 특수구조 건축물
- 기타 구조분야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 사업주체 : 본청, 교육지원청

### ○ 총사업비 : 24,750천원(기정예산 16,500천원 + 추경예산 8,250천원)

### ○ 사업내용

- 보강사업 내진성능 비선형평가 결과에 대한 3자 검토지원
- 내진 특수공법을 적용한 내진성능 비선형평가 결과에 대한 3자 검토지원
- 내진보강사업 진행 시 현장점검

### ○ 편성근거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제2020-223호)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내진자문 기술 지원단	위원수당	100,000원*5명*33회=	16,500	11,000	5,500	-내용 ○ 교육시설 내진·특수구조 자문 및 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천안여중 외 124동 -증감사유: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건수 증가에 따라 자문위원단과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
	검토수당	50,000원*5명*33회=	8,250	5,500	2,750	
	소계		24,750	16,500	8,250	
합계 ①			24,750	16,500	8,25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24,750	16,500	8,25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4,750	0	0	24,750
기정예산 (B)	0	0	16,500	0	0	16,500
추경증감 (C=A-B)	0	0	8,250	0	0	8,25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1,500	31,419	81	99.7%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 전 총 괄 과		<b>교육시설안전인증</b>	정 책 사 업	교육행정일반
9			단 위 사 업	시설사업관리
기 존			세 부 사 업	시설사업관리
신 규	○		세세부사업	학교시설공사현장점검 단운영
예산서	500쪽	각 목	159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640-84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시설에 대한 통학, 환경, 활동안전 및 시설안전 인증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주관교육청을 지정 일괄 용역 추진(교육부 분담금 수립)
- 사업대상 : 관내 12개교(계획중)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충청남도교육청
- 총사업비 : **84,000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84,000천원)**
- 사업내용 : 교육시설안전인증 위탁 용역  
(시설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에 관한 인증으로 신설교 외 기존시설 인증관련)
- 편성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교육시설 안전인증	일반용역비	84,000,000원*1식=	84,000	0	84,000	-내용 °교육시설안전인증 위탁 용역비로 타 사도 주관교육청이 용역시행 후 일괄 지출 -증감사유: 교육부 분담금 조성요청에 따른 용역비 수립(84,000 천원 증액)
<b>합계 ①</b>			<b>84,000</b>	<b>0</b>	<b>84,000</b>	
<b>미변동 사업금액 ②</b>			<b>0</b>	<b>0</b>	<b>0</b>	
<b>총사업비 ③=①+②</b>			<b>84,000</b>	<b>0</b>	<b>84,000</b>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84,000	0	0	84,00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84,000	0	0	84,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 전 총 괄 과		<b>교사개축</b>	정 책 사 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1			단 위 사 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 존	○		세 부 사 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 규			세세부사업	교사개축			
예산서	414쪽	각 목	229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640-84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 안전 등급 D등급이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교사개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 사업대상 : 천북초, 방포초, 안면중
- 사업기간 : 2021. 7. ~ 2022. 12.
- 사업주체 : 보령·서천·태안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9,464,654천원(기정예산 10,993,585천원 + 추경예산 △1,528,931천원)**
- ※증감사유 : 2021년도 시설비 일부 반영교 잔여사업비 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8,931천원 감액
- 사업내용 : 교사개축
- 편성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재난위험 시설	천북초	집기 이전비	34,000,000원*1식=	34,000	0	34,000	-내용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교사개축) ◦안면중은 공사 진행에 따른 금년도 집행가능 시설비(844,964천원)와 감리비(17,437천원)만 반영 ◦개축공사에 따른 천북초, 방포초, 안면중 교사이전 집기이전비 편성 -대상: 천북초, 방포초, 안면중 -증감사유: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당해년도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비 반영하여 계속사업 추진(1,528,931천원 감액)
	방포초	집기 이전비	20,000,000원*1식=	20,000	0	20,000	
	안면중	시설비	844,964,000원*1식=	844,964	2,406,730	-1,561,766	
	안면중	감리비	17,437,000원*1식=	17,437	54,602	-37,165	
	안면중	집기 이전비	16,000,000원*1식=	16,000	0	16,000	
	소계			<b>932,401</b>	<b>2,461,332</b>	<b>-1,528,931</b>	
합계 ①			<b>932,401</b>	<b>2,461,332</b>	<b>-1,528,931</b>		
미변동 사업금액 ②			8,532,253	8,532,253	0		
총사업비 ③=①+②			<b>9,464,654</b>	<b>10,993,585</b>	<b>-1,528,931</b>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9,464,654	0	0	9,464,654
기정예산 (B)	0	0	10,993,585	0	0	10,993,585
추경증감 (C=A-B)	0	0	-1,528,931	0	0	-1,528,931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06,000	105,997	3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보 령	2,000,000원*7실=	34,000	
태 안	2,000,000원*10실=	20,000	
	2,000,000원*8실=	16,000	
	-1,561,766,000원*1식=	-1,561,766	
	-37,165,000원*1식=	-37,165	
합계		-1,528,931	

안 전 총 괄 과	<b>다목적강당수선</b>				정 책 사 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2					단 위 사 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 존					세 부 사 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 규 ○					세세부사업	다목적강당수선
예산서 429쪽	각 목 295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640-84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여초 다목적강당 지붕마감재(기와)교체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로 학생·교직원 안전확보
- 사업대상 : 부여초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50,224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50,224천원)**
- 사업내용 : 다목적강당수선
- 편성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다목적 강당수선	부여초	시설비	344,000원*146㎡=	50,224	0	50,224	-내용 ◦다목적강당 지붕재(기와) 노후로 탈락 및 추락이 우려되어 기와 전체면적 교체 -대상: 부여초 -증감사유: 학생안전을 위한 다목적강당 수선 신규편성(50,224천 원 증액)
합계 ①				50,224	0	50,224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50,224	0	50,224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50,224	0	0	50,224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50,224	0	0	50,224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부 여	344,000원*146㎡=	50,224	
	합계	50,224	

안 전 총 괄 과					정 책 사 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3	<b>안전시설</b>				단 위 사 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 존 ○					세 부 사 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 규					세세부사업	안전시설
예산서 427쪽	각 목	265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640-84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 시 교육수요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한 적절한 직통계단설치
  - 학생 통학로 옥외계단, 사면 경사로, 옹벽 추락방지 난간대 등 파손되거나 미설치구간에 추가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여 학생·교직원 안전확보
- 사업대상 : 논산공고, 금산여고, 대흥고, 송악고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논산계룡, 금산, 예산)
- 총사업비 : **198,868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198,868천원)**
- 사업내용 : 기숙사 비상(직통)계단설치, 안전난간대 설치
- 편성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충남교육청 교육시설 직통계단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 개선방안

- 2방향 이상 대피 불가능 교육시설에 대하여 비상대피 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실외 비상탈출구 (직통계단 등) 추가설치
- 기숙사 침실에서 직통계단까지 최대 보행거리 및 대피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실외 직통계단 설치 추진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비상계단 설치	논산공고	시설비 30,000,000원*2층=	60,000	0	60,000	-내용 ◦기숙사 운영교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 설치 -대상: 논산공고, 금산여고, 대흥고 -증감사유: 기존 계단실 외 추가 대피 가능 통로 확보(180,000천원 증액)
	금산여고	시설비 30,000,000원*2층=	60,000	0	60,000	
	대흥고	시설비 30,000,000원*2층=	60,000	0	60,000	
	소계			180,000	0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옥상안전난간대	송악고	시설비	212,000원*89㎡=	18,868	0	18,868	-내용 ◦안전난간 추가 설치필요 구간(통학로 옥외계단, 경사로, 옹벽 추락방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학생·교직원 안전확보 -대상: 송악고 -증감사유: 안전 난간대 필요에 따른 설치(18,868천원 증액)
	소계			18,868	0	18,868	
합계 ①				198,868	0	198,868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98,868	0	198,868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98,868	0	0	198,868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198,868	0	0	198,868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7,000	203,995	3,005	98.5%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식	금액	비고
논	산	30,000,000원*2층=	60,000
금	산	30,000,000원*2층=	60,000
예	산	60,000,000원*1교=	60,000
당	진	212,000원*89㎡=	18,868
합계			198,868

안 전 총 괄 과		<b>어린이놀이시설개선</b>	정 책 사 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4			단 위 사 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 존	○		세 부 사 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 규			세세부사업	어린이놀이시설개선			
예산서	412쪽	각 목	205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640-84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시설이용자(어린이, 학부모)에게 실시간 안전관리 정보 제공
- 사업대상 : 교육지원청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59,400천원(기정예산 7,920천원 + 추경예산 51,480천원)**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 편성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	59,400,000원*1식=	59,400	7,920	51,480	-내용 ◦스마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하반기 6개월) ◦기 편성된 당진교육지원청(7,920천 원) 이외 교육지원청 지원 -증감사유: 본청 및 13개 교육지원청 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55,440천 원 증액)
<b>합계 ①</b>			<b>59,400</b>	<b>7,920</b>	<b>51,480</b>	
<b>미변동 사업금액 ②</b>			<b>0</b>	<b>0</b>	<b>0</b>	
<b>총사업비 ③=①+②</b>			<b>59,400</b>	<b>7,920</b>	<b>51,480</b>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59,400	0	0	59,400
기정예산 (B)	0	0	7,920	0	0	7,920
추경증감 (C=A-B)	0	0	51,480	0	0	51,48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천	안	3,960,000원*1 식=	3,960
공	주	3,960,000원*1 식=	3,960
보	령	3,960,000원*1 식=	3,960
아	산	3,960,000원*1 식=	3,960
서	산	3,960,000원*1 식=	3,960
논	산 계 룡	3,960,000원*1 식=	3,960
금	산	3,960,000원*1 식=	3,960
부	여	3,960,000원*1 식=	3,960
서	천	3,960,000원*1 식=	3,960
청	양	3,960,000원*1 식=	3,960
홍	성	3,960,000원*1 식=	3,960
예	산	3,960,000원*1 식=	3,960
태	안	3,960,000원*1 식=	3,960
합계			51,480

안전총괄과	<b>외부환경개선</b>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5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준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규 ○		세세부사업	외부환경개선
예산서 397쪽	각 목 202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김성광 ☎640-8433 ☎640-8414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2021년도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 외부환경 시설개선으로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 2021년 교통안전 관련 사업추진 안내(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5822, '20.10.30.)

### ○ 사업대상

- (재해예방) 환서초 외 17개 학교
- (교통안전) 17교(초 8, 중 3, 고 5, 특 1)

### ○ 사업기간 : 2021. 7. ~ 2022. 12.

### ○ 사업주체

- (재해예방) 환서초 외 9개교 및 충청남도천안·공주·당진·논산계룡·홍성·예산·서천·태안교육지원청
- (교통안전) 충청남도 공주·아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교육지원청

### ○ 총사업비 : 1,707,343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1,707,343천원)

### ○ 사업내용 : 배수로덮개 등

### ○ 편성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별표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건축물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로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배수로 덮개	환서초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220개=	31,900	0	31,900	-내용 °운동장 안전사고가 빈번한 배수로 및 맨홀 그릴형 뚜껑 위에 우레탄소재 판막형 덮개를 덧씌우는 안전시설 -대상: 환서초 외 12개교 -증감사유: 학교안전시설 사전조사 시 운동장 안전 개선사항으로 다수 학교 요청하여 반영 (359,310원 증액)
	공주신월초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170개=	24,650	0	24,650	
	원당초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240개=	34,800	0	34,800	
	당진초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340개=	49,300	0	49,300	
	내포초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320개=	46,400	0	46,400	
	천안중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433개=	62,785	0	62,785	
	천안 가운중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207개=	30,000	0	30,000	
	천안동중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207개=	30,000	0	30,000	
	천안 병천중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207개=	30,000	0	30,000	
	월봉고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204개=	29,580	0	29,580	
	천안공고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156개=	22,620	0	22,620	
	용남고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150개=	21,750	0	21,750	
예산 전자공고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45,000원*245개=	35,525	0	35,525		
소계			<b>449,310</b>	<b>0</b>	<b>449,310</b>		
담장 (디자인 웬스)	창기초	시설비	359,000원*120m=	43,080	0	43,080	-내용 °호우 시 비탈면 토사유실로 옹벽공사와 함께 담장개선 추진
	석문초	시설비	204,000원*70m=	14,280	0	14,280	
담장 (메쉬 웬스)	업성고	시설비	204,000원*100m=	20,400	0	20,400	-내용 °호우 시 비탈면 토사유실로 옹벽공사와 함께 담장개선 추진
	소계			<b>34,680</b>	<b>0</b>	<b>34,680</b>	
옹벽 (역자)	북창초	설계비	456,000,000원*6.17%=	28,135	0	28,135	-내용 °북창초, 석문초, 업성고는 호우 시 비탈면 토사유실이 진행되는 학교로 옹벽설치로 항구 예방조치 예정 °북창초는 예상사업비가 총 456,400 천원으로 예상으로 비교적 크므로 금년 설계 후 2022년 시설공사 예정 -증감사유: 학교안전시설 사전조사 옹벽 설치 필요 3교와 창기초 교사후면 노후 담장 및 옹벽 보강공사(287,422천원 증액)
	창기초	시설비	472,000원*265㎡=	125,080	0	125,080	
	석문초	설계비	54,244,000원*6.16%=	3,341	0	3,341	
	석문초	시설비	472,000원*54㎡=	25,488	0	25,488	
	석문초	시설부대비	54,244,000원*0.65%=	353	0	353	
	업성고	설계비	176,500,000원*6.02%=	10,625	0	10,625	
	업성고	시설비	472,000원*200㎡=	94,400	0	94,400	
	소계			<b>287,422</b>	<b>0</b>	<b>287,422</b>	
배수로 (콘크리 트)	석문초	시설비	329,000원*44m=	14,476	0	14,476	-내용 °호우 시 비탈면 토사유실로 옹벽공사와 함께 배수로 신설 추진
	업성고	시설비	329,000원*100m=	32,900	0	32,900	
	소계			<b>47,376</b>	<b>0</b>	<b>47,376</b>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시설비	기타				
포장(블럭)	업성고	시설비	75,000원*400㎡=	30,000	0	30,000	-내용 ◦호우 시 비탈면유실로 인한 기존 포장 손상 면적이 다수 존재하여 개선
비탈면보수	홍주중	시설비	103,840,000원*1식=	103,840	0	103,840	-내용 ◦운동장 법면 호우 피해대비 보수
교내보차도분리	교내보차도분리(공립)	시설비(420-03)	559,203,000원*1식=	559,203	0	559,203	-내용 ◦학교내(정문~교사동) 보도블럭, 노면 표시, 차선규제등 등의 안전시설물을 활용한 보차도 시설 설치 -대상: 17교(초 8, 중 3, 고 5, 특 1) -증감사유: 교내 보도, 차보 분리 추가 지원계획에 의한 증액
		시설비(620-04)	49,640,000원*1식=	49,640	0	49,640	
		시설비(620-11)	102,792,000원*1식=	102,792	0	102,792	
	소계		711,635	0	711,635		
합계 ①				1,707,343	0	1,707,343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707,343	0	1,707,343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A)	0	0	1,707,343	0	0	1,707,343
기정예산(B)	0	0	0	0	0	0
추경증감(C=A-B)	0	0	1,707,343	0	0	1,707,343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846,070	1,681,710	164,360	91.1%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식	금액	비고
천안	425,210,000원*1식=	425,210	
공주	24,650,000원*1식=	24,650	
논산계룡	21,750,000원*1식=	21,750	
당진	170,173,000원*1식=	170,173	
홍성	150,240,000원*1식=	150,240	
예산	35,525,000원*1식=	35,525	
태안	168,160,000원*1식	168,160	
합계		995,708	

□ 지역배분 내역(교내 보차도분리)

(단위 : 천원)

구분	산식	금액	비고
공주	111,276,000원*1식=	111,276	2교
아산	93,585,000원*1식=	93,585	1교
논산계룡	73,450,000원*1식=	73,450	2교
당진	116,356,000원*1식=	116,356	4교
부여	38,320,000원*1식=	38,320	1교
서천	24,860,000원*1식=	24,860	2교
청양	24,000,000원*1식=	24,000	1교
홍성	27,000,000원*1식=	27,000	2교
예산	202,788,000원*1식=	202,788	2교
합계		711,635	17교

안 전 총 괄 과	<b>전기시설개선</b>				정 책 사 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6					단 위 사 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 존 ○					세 부 사 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 규					세세부사업	전기시설보수
예산서 383쪽	각 목 274쪽	담당자 주무관 이진희	☎640-84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원차단시설(일괄전원) 설치로 화재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 사업대상 : 기지초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54,815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54,815천원)**
- 사업내용 : 전원차단시설 설치
- 편성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9조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전기시설 보수	기지초	시설비	54,815,000원*1식=	54,815	0	54,815	-내용 °전원 일괄 통제가 가능한 전원차단 시설 설치로 화재안전예방 및 학생·교직원 안전확보 -대상: 기지초 -증감사유: 전원차단시설 설치(54,815천원 증액)
합계 ①				54,815	0	54,815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54,815	0	54,815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54,815	0	0	54,815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54,815	0	0	54,815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당 진	54,815,000원*1식=	54,815	
합계		54,815	

안전총괄과		<h1>내진보강</h1>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7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존	○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규			세세부사업	내진보강			
예산서	392쪽	각 목	202쪽	담당자	공업6급	최진만	☎640-8432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6. 9. 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어 내진에 대한 요구 확대
  - 지진재해 대책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진방지종합대책 8개 과제 중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사업대상 : 천안여중 외 124동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13,898,422천원(기정예산 8,659,885천원 + 추경예산 5,238,537천원)**
  - ※증감사유 : 내진보강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부족분 증액
- 사업내용
  - 내진성능평가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
  -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건물에 대한 평가용역 실시
- 편성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내진보강	내진보강 (공립) 시설비	8,238,841,000원*1식=	8,238,841	7,063,185	1,175,656	-내용 ◦내진성능평가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건물에 대한 평가용역 실시 -대상: 천안여중 외 124동 -증감사유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부족분 증액
	내진보강 (사립) 시설비	805,307,000원*1식=	805,307	590,000	215,307	
	소계			<b>9,044,148</b>	<b>7,653,185</b>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공립) 시설비	4,388,546,000원*1식=	4,388,546	964,070	3,424,476	
	내진성능평가 (사립) 시설비	465,728,000원*1식=	465,728	42,630	423,098	
	소계			<b>4,854,274</b>	<b>1,006,700</b>	
합계 ①			<b>13,898,422</b>	<b>8,659,885</b>	<b>5,238,537</b>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b>13,898,422</b>	<b>8,659,885</b>	<b>5,238,537</b>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3,898,422	0	0	13,898,422
기정예산 (B)	0	0	8,659,885	0	0	8,659,885
추경증감 (C=A-B)	0	0	5,238,537	0	0	5,238,537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천 안	374,000원*1식=	374,000	
공 주	734,755원*1식=	734,755	
보 령	515,010원*1식=	515,010	
아 산	556,172원*1식=	556,172	
논 산 계 룡	402,025원*1식=	402,025	
당 진	153,814원*1식=	153,814	
금 산	192,416원*1식=	192,416	
부 여	566,454원*1식=	566,454	
서 천	530,520원*1식=	530,520	
청 양	250,898원*1식=	250,898	
홍 성	257,029원*1식=	257,029	
예 산	225,697원*1식=	225,697	
태 안	479,747원*1식=	479,747	
합계		5,238,537	

안전총괄과	<h1>기타시설</h1>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8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존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규 ○				세세부사업	안전시설
예산서 422쪽	각 목 276쪽	담당자 방재안전7급 김성광 ☎640-841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등·하교시간 학교주변 학부모 등하교 차량으로 혼잡발생에 따른 학생 교통안전사고 예방
- 사업대상 : 초등학교 4교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당진, 서천, 예산)
- 총사업비 : **288,099천원(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288,099천원)**  
 ※증감사유 : 한줄은행 승하차시설 추가 지원계획에 의한 증액
- 사업내용
  -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한줄은행 승하차 시설 설치
  - 토목공사(철거 포함), 도로바닥 노면표시(차량유도선), 부속 시설물 설치
- 편성근거
  - 등하굣길 학부모 차량 승하차시스템 확대 추진 계획 수립(2020.9.7.)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정책 제안(2020.7.15.)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한줄은행 승하차 시설	한줄은행 승하차 시설 시설비 (420-03)	268,819,000원*1식=	268,819	0	268,819	-내용 ◦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한줄은행 승하차 시설 설치 -대상: 초등학교 4교 -증감사유 : 한줄은행 승하차시설 추가 지원계획에 의한 증액
	한줄은행 승하차 시설 시설비 (620-04)	19,280,000원*1식=	19,280	0	19,280	
	소계		288,099	0	288,099	
합계 ①			288,099	0	288,099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288,099	0	288,099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88,099	0	0	288,099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288,099	0	0	288,099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식	금 액	비 고
당진	155,303,000원*1식=	155,303	2교
서천	19,280,000원*1식=	19,280	1교
예산	113,516,000원*1식=	113,516	1교
합계		288,099	4교

안전총괄과		<b>유류 난방기 교체</b>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역배분 9			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기존			세부사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규	○		세세부사업	냉난방시설개선
예산서	377쪽	각 목	200쪽	담당자 행정6급 이재병 ☎640-8431

## □ 유류 난방기 교체

- 사업목적 : 화재에 취약한 유류난방기 교체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대상 : 천안 입장초 등 21교 (교체 수량 63대)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교육지원청(9기관), 학교(21교)
- 총사업비 : **956,980천원(순증)**
- 사업내용 : 다목적 강당(체육관) 내에 설치된 화재에 취약한 [고정식] 유류난방기 교체
- 편성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유류 난방기 교체	난방기	12,482,500원*8교=	99,860	0	99,860	-내용 ○ 체육관 내에 설치된 화재에 취약한 유류난방기 교체 ○ 화재예방과 학생건강을 위한 사업 -대상: 천안 입장초 등 21교 (수량 63대)
	시설비	65,932,308원*13실=	857,120	0	857,120	
합계 ①			956,980	0	956,98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956,980	0	956,98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계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경정예산 (A)	0	0	956,980	0	0	956,980
기정예산 (B)	0	0	0	0	0	0
추경증감 (C=A-B)	0	0	956,980	0	0	956,98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식	금액	비고
천안	17,302,667*12식=	207,632	
공주	8,386,000원*1대=	8,386	
보령	8,000,000원*2대=	16,000	
서산	9,408,000원*3식=	28,224	
논산계룡	8,272,727원*11식=	91,000	
서천	59,500,000원*2식=	119,000	
홍성	8,386,000원*9대=	75,474	
예산	17,022,364원*22식=	374,492	
태안	18,386,000원*2식=	36,772	
<b>합계</b>		<b>956,98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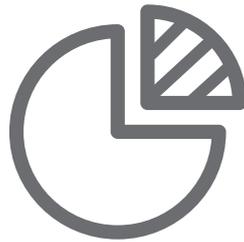
## II. 세출예산 (감추경)





## II. 세출예산(감추경)

### 1. 감사관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추경 목록

○ 부서명 : 감사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감사업무담당자위탁연수	162	454	91	5,000	15,000	-10,000
2	학부모명예감사관	164	454	91	4,600	7,800	-3,200
<b>합 계</b>					<b>9,600</b>	<b>22,800</b>	<b>-13,200</b>

감사관		감사업무담당자위탁연수(감추경)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1			단위사업	감사관리			
기존	○		세부사업	감사관리			
신규			세세부사업	감사교육원위탁교육			
예산서	454쪽	각 목	91쪽	담당자	주무관	이민규	☎640-7927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감사교육원 교육훈련 참여로 감사 및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 사업대상 : 감사담당공무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5,000천원(기정예산 15,000천원 + 추경예산 △1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원격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함에 따라 교육 경비 및 여비 감액(기정예산 대비 10,0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감사관련교육 이수
- 편성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 제19조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감사 담당자 위탁연수	교육경비	300,000원*10명=	3,000	9,000	-6,000	-내용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감사교육원 위탁 연수 -대상: 감사담당공무원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 취소와 온라인교육으로의 대체로 인한 교육경비 및 여비 감액
	연수여비	200,000원*10명=	2,000	6,000	-4,000	
	소계		5,000	15,000	-10,000	
합계 ①			5,000	15,000	-10,00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5,000	15,000	-10,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5,000	0	0	5,000
기정예산 (B)	0	0	15,000	0	0	15,000
추경증감 (C=A-B)	0	0	-10,000	0	0	-10,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400	2,292	108	95.5%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감사관	<b>학부모명예감사관(감추경)</b>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2				단위사업	감사관리
기존 ○				세부사업	감사관리
신규				세세부사업	도민감사관제운영
예산서	454쪽	각 목	91쪽	담당자	행정7급 김웅태 ☎640-7926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열린감사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도민 신뢰도 향상, 교육수요자의 감사 참여 기회 확대 및 현장중심의 감사활동 지원
- 사업대상 : 종합감사 대상교 학부모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4,600천원(기정예산 7,800천원 + 추경예산 △3,2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방역체계 확보,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화상감사 확대에 의한 명예감사관 참여 대상교 축소(55교 -> 27교)
- 사업내용 : 감사과정 참관을 통한 모니터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
- 편성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14조(명예감사관 등 운영)

제14조(명예감사관제 등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명예감사관제 또는 감사참관인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감사관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관이 따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학부모 명예감사관	교통비	20,000원*2명*100일=	4,000	7,200	-3,200	-내용 ◦ 감사과정 참관을 통한 모니터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 -대상: 종합감사 대상교 학부모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방역체계 확보와 비대면 화상감사 확대 실시에 따른 학부모 명예감사관 참여 대상교 축소
	일반수용비	20,000원*5종*6회=	600	600	0	
	소계		4,600	7,800	-3,200	
합계 ①			4,600	7,800	-3,20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4,600	7,800	-3,2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4,600	0	0	4,600
기정예산 (B)	0	0	7,800	0	0	7,800
추경증감 (C=A-B)	0	0	-3,200	0	0	-3,2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000	2,040	960	68.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II. 세출예산(감추경)

### 2. 총무과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추경 목록

○ 부서(기관)명 : 총무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장애인고용부담금	170	122	147	2,021,099	2,289,931	-268,832
2	건강보험부담금(교육전문직원)	172	126	147	1,042,179	1,051,388	-9,209
3	연금부담금(교육전문직원)	174	126	147	3,669,201	3,807,063	-137,862
4	퇴직수당부담금(교육전문직원)	176	126	147	1,113,704	1,155,549	-41,845
5	재해보상부담금(교육전문직원)	178	126	147	19,446	20,177	-731
6	임용관리운영	180	149	147	110,000	155,000	-45,000
합 계					7,975,629	8,479,108	-503,479

총 무 과	<b>장애인고용부담금</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1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 존 ○		세 부 사 업	교원인건비
신 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2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신동진 ☎640-8027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3.4%) 미충족에 따른 고용부담금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2,021,099천원(기정예산 2,289,931천원 + 추경예산 △268,832천원)**

### ※증감사유

- 1) 장애인공무원 현황 파악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수 32명 증가(335명 → 367명)로 부담금 감소
  - 2)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후 잔액 발생
- 사업내용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3.4%) 미충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 편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1,142,680원*147명 *12월=	2,021,099	2,289,931	-268,8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3.4%)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행 파악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수 증가로 부담금 감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후 잔액 발생
	소계		2,021,099	2,289,931	-268,832	
합계 ①			2,021,099	2,289,931	-268,832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2,021,099	2,289,931	-268,832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021,099	0	0	2,021,099
기정예산 (B)	0	0	2,289,931	0	0	2,289,931
추경증감 (C=A-B)	0	0	-268,832	0	0	-268,832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건강보험부담금 (교육전문직원)</b>	정책 사업	인적자원운용
2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6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직자의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원활한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042,179천원(기정예산 1,051,388천원 + 추경예산 △9,209천원)**
- ※증감사유 :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 감액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원활한 납부
- 편성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를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건강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30,384,242,000원 *3.43% =	1,042,179	1,051,388	-9,209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1,042,179	1,051,388	-9,209	
	합계 ①		1,042,179	1,051,388	-9,209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042,179	1,051,388	-9,209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042,179	0	0	1,042,179
기정예산 (B)	0	0	1,051,388	0	0	1,051,388
추경증감 (C=A-B)	0	0	-9,209	0	0	-9,209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72,880	214,759	58,121	78.7%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연금부담금 (교육전문직원)</b>			정책 사업	인적자원운용
3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존 ○				세 부 사 업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신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6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연금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3,669,201천원(기정예산 3,807,063천원 + 추경예산 △137,862천원)**
- ※증감사유 :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감액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1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

###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30,384,242,000원 *12.076%=	3,669,201	3,807,063	-137,862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3,669,201	3,807,063	-137,862	
합계 ①			3,669,201	3,807,063	-137,862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3,669,201	3,807,063	-137,862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3,669,201	0	0	3,669,201
기정예산 (B)	0	0	3,807,063	0	0	3,807,063
추경증감 (C=A-B)	0	0	-137,862	0	0	-137,862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232,890	3,206,467	26,423	99.3%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h2 style="margin: 0;">퇴직수당부담금 (교육전문직원)</h2>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4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 존		○	세 부 사 업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신 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6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 퇴직 시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113,704천원(기정예산 1,155,549천원 + 추경예산 △41,845천원)**
- ※증감사유 :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감액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3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

#### [공무원연금법]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30,384,242,000원 *3.6654% =	1,113,704	1,155,549	-41,845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1,113,704	1,155,549	-41,845	
합계 ①			1,113,704	1,155,549	-41,845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113,704	1,155,549	-41,845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113,704	0	0	1,113,704
기정예산 (B)	0	0	1,155,549	0	0	1,155,549
추경증감 (C=A-B)	0	0	-41,845	0	0	-41,845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061,543	1,061,543	0	10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재해보상부담금 (교육전문직원)</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용
5		단 위 사 업	공무원인건비
기 존 ○		세 부 사 업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신 규		세세부사업	공무원법정부담금
예산서 126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정준목 ☎640-8028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에게 재해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 사업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9,446천원(기정예산 20,177천원 + 추경예산 △731천원)**
- ※증감사유 :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감액
- 사업내용 : 공무원법정부담금의 납부
- 편성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을,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보상부담금”으로 본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재해보상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30,384,242,000원 *0.064%=-	19,446	20,177	-731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분 반영
	소계		19,446	20,177	-731	
합계 ①			19,446	20,177	-731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9,446	20,177	-731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9,446	0	0	19,446
기정예산 (B)	0	0	20,177	0	0	20,177
추경증감 (C=A-B)	0	0	-731	0	0	-731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063	19,775	288	98.5%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총 무 과	<b>임용관리운영</b>	정 책 사 업	인적자원운영
6		단 위 사 업	지방공무원인사관리
기 존 ○		세 부 사 업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신 규		세 세 부 사 업	공개경쟁임용
예산서 149쪽	각 목 147쪽	담당자 주무관	최종신 ☎640-8022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 사업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분청
- 총사업비 : **110,000천원(기정예산 155,000천원 + 추경예산 △45,000천원)**  
 ※증감사유 :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수탁출제비용 감소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45,0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 편성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임용관리 운영	분담금	110,000,000원*1기관=	110,000	155,000	-45,000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연1회) -대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증감사유: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수탁출제비용 감소
	소계		110,000	155,000	-45,000	
	합계 ①		110,000	155,000	-45,0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110,000	155,000	-45,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10,000	0	0	110,000
기정예산 (B)	0	0	155,000	0	0	155,000
추경증감 (C=A-B)	0	0	-45,000	0	0	-45,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55,000	98,164	56,836	63.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II . 세출예산(감추경)

### 3. 행정과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추경 목록

○ 부서(기관)명 : 행정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무상급식지원금	186	300	151	2,073,276	2,116,113	-42,837
2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88	351	151	121,285,186	126,085,186	-4,800,000
3	학교운영지원비	190	353	151	4,742,475	4,836,272	-93,797
<b>합 계</b>					<b>128,100,937</b>	<b>133,037,571</b>	<b>-4,936,634</b>

연번	사 업 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지역 배분	1. 무상급식지원금	192	300	196	1,100,855	2,088,985	-988,130
	2.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95	351	227	72,825,109	73,297,276	-472,167
	3.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98	353	198	20,640,418	21,867,145	-1,226,727
<b>합 계</b>					<b>94,566,382</b>	<b>97,253,406</b>	<b>-2,687,024</b>

행 정 과				정 책 사 업	교육복지지원		
1	<b>무상급식지원금(감추경)</b>			단 위 사 업	급식지원		
기 존				○	세 부 사 업	학기중급식비지원	
신 규					세 세 부 사 업	무상급식지원	
예산서				300쪽	각 목	151쪽	담당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무상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건전한 심신 발달 증진  
학부모 부담경감과 균형 있는 교육복지 실현
- 사업대상 : 사립 고·특수·고기(37교)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2,073,276천원(기정예산 2,116,113천원 + 추경예산 △42,837천원)**  
※증감사유 : 2020. 9. 1.기준대비 학생수 감소로 무상급식지원금 재정결함소요액 감소(기정예산 대비 42,837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중식비 및 친환경 식품비,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석식비
- 편성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통학차량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편성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 10. 17., 2010. 7. 23., 2021. 3. 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본청	사립고	2,073,276원*1식=	2,050,542	2,093,379	-42,837	-내용 ◦사립 고·고(35교) 무상급식지원금 재정결함 보조 -대상: 사립 고·고(35교) -증감사유: 2020.9.1.기준대비 학생수 감소로 무상급식지원금 재정결함소요액 감소
합계 ①			2,050,542	2,093,379	-42,837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22,734	22,734	0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2,073,276	2,116,113	-42,837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A)	0	0	2,073,276	0	0	2,073,276
기정예산(B)	0	0	2,116,113	0	0	2,116,113
추경증감(C=A-B)	0	0	-42,837	0	0	-42,837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759,547	1,759,547	0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행 정 과	<b>인건비재정결함보조(감추경)</b>	정 책 사 업	학교재정지원관리				
2		단 위 사 업	사학재정지원				
기 존 ○		세 부 사 업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신 규		세세부사업	인건비				
예산서	351쪽	각 목	151쪽	담당자	주무관	신가은	☎640-813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사학육성 도모
- 사업대상 : 사립 고·특수·고기(37교)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121,285,186천원(기정예산 126,085,186천원 + 추경예산 △4,800,000천원)**  
 ※증감사유 : 기준재정수요액(교원 수 감소 및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로 인건비 재정 결함소요액 감소(기정예산 대비 4,800,0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사립 고·특수·고기(37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 편성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편성근거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재정보조)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본청	사립고	114,464,106,000원=	114,464,106	119,264,106	-4,800,000	-내용 ◦사립 고·특수·고기(37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대상: 사립 고·특수·고기(37교) -증감사유: 기존재정수요액(교원 수 감소 및 명예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로 인건비 재정결함소요액 감소
합계 ①			114,464,106	119,264,106	-4,800,000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6,821,080	6,821,080	0	※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121,285,186	126,085,186	-4,800,0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21,285,186	0	0	121,285,186
기정예산 (B)	0	0	126,085,186	0	0	126,085,186
추경증감 (C=A-B)	0	0	-4,800,000	0	0	-4,800,0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13,861,401	113,860,489	912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행 정 과				정 책 사 업	학교재정지원관리		
3	<b>학교운영지원비(감추경)</b>			단 위 사 업	사학재정지원		
기 존				○	세 부 사 업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신 규					세 세 부 사 업	운영비부족분지원	
예산서				353쪽	각 목	151쪽	담당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재정을 보완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사업대상 : 사립고 35교(고등기술학교 1교 포함)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4,742,475천원(기정예산 4,836,272천원 + 추경예산 △93,797천원)**  
 ※증감사유 : 2020. 9. 1.기준대비 학생수 감소로 학교운영지원비 재정결함소요액 감소(기정예산 대비 93,797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사립 고·고기(35교) 학교운영지원비 재정결함 보조
- 편성근거 :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재원분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학부모 부담경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본청	사립고	4,742,475,000원=	4,742,475	4,836,272	-93,797	-내용 ◦사립 고·기(35교) 학교운영지원비 재정결함 보조 -대상: 사립 고·고기(35교) -증감사유: 2020.9.1.기준대비 학생수 감소로 학교 운영지원비 재정결함소요액 감소
합계 ①			4,742,475	4,836,272	-93,797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해당사업 내에 이번 추경 시 변동되지 않는 사업 총금액
총사업비 ③=①+②			4,742,475	4,836,272	-93,797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A)	0	0	4,742,475	0	0	4,742,475
기정예산(B)	0	0	4,836,272	0	0	4,836,272
추경증감(C=A-B)	0	0	-93,797	0	0	-93,797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4,557,144	4,549,132	8,011	99.8%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행 정 과	<b>무상급식지원금(감추경)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교육복지지원
지역배분 1		단 위 사 업	급식지원
기 존 ○		세 부 사 업	학기중급식비지원
신 규		세 세 부 사 업	무상급식지원
예산서 300쪽	담당자	주무관	신가은 ☎640-813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무상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건전한 심신 발달 증진  
학부모 부담경감과 균형 있는 교육복지 실현
- 사업대상 : 사립 초·중(43교)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1,100,855천원(기정예산 2,088,985천원 + 추경예산 △988,130천원)**  
※증감사유 : 2020. 9. 1. 기준 대비 학생수 감소 및 일부 지역 무상급식 식품비가 현물지원으로 변경되어 무상급식지원금 재정결함소요액 감소(기정예산 대비 988,13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사립학교 초·중학교 중식비 및 친환경 식품비
- 편성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통학차량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편성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 10. 17., 2010. 7. 23., 2021. 3. 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무상급식지원금	사립중	1,100,855,000원=	1,100,855	2,088,985	-988,130	-내용 ◦ 사립초·중학교 중식비 및 친환경 식품비 -대상: 사립초·중학교(43교) -증감사유: 2020. 9. 1.기준대비 학생수 감소 및 일부지역 무상급식 식품비가 현물지원으로 변경되어 무상급식지원금 재정결함 소요액 감소
합계 ①			1,100,855	2,088,985	-988,130	
미변동 사업금액 ②			85,569	85,569	0	
총사업비 ③=①+②			1,186,424	2,174,554	-988,13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100,855	0	0	1,100,855
기정예산 (B)	0	0	2,088,985	0	0	2,088,985
추경증감 (C=A-B)	0	0	-988,130	0	0	-988,13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821,029	1,821,025	4	100.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식	금액	비고
천안	149,693,000*1식=	149,693,000	6,082
공주	28,060,000*1식=	28,060,000	-1,916
보령	218,972,000*1식=	218,972,000	8,937
아산	108,650,000*1식=	108,650,000	
서산	67,551,000*1식=	67,551,000	-626,673
논산계룡	79,954,000*1식=	79,954,000	2,736
당진	132,790,000*1식=	132,790,000	8,391
부여	24,443,000*1식=	24,443,000	-219,515
서천	12,134,000*1식=	12,134,000	1,044
청양	6,156,000*1식=	6,156,000	-43,086
홍성	255,179,000*1식=	255,179,000	-10,092
예산	17,273,000*1식=	17,273,000	-114,038
합계		1,100,855,000	-988,130

행 정 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감추경) (지역배분)	정 책 사 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역배분 2		단 위 사 업	사학재정지원
기존 ○		세 부 사 업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신규		세세부사업	인건비
예산서 351쪽	담당자 주무관	신가은 ☎640-813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사학육성 도모
- 사업대상 : 사립 초·중(43교)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72,825,109천원(기정예산 73,297,276천원 + 추경예산 △472,167천원)**  
 ※증감사유 : 기준재정수요액(교원 수 감소 및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로 인건비 재정결함 소요액 감소(기정예산 대비 472,167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사립 초·중(43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 편성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편성근거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재정보조)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사립중	72,825,109,000원=	72,825,109	73,297,276	-472,167	-내용 ·사립초·중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대상: 사립초·중학교(43교) -증감사유: 기존재정수요액(교원 수 감소 및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로 인건비 재정결함소요액 감소
합계 ①			72,825,109	73,297,276	-472,167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747,771	747,771	0	
총사업비 ③=①+②			73,572,880	74,045,047	-472,167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72,825,109	0	0	72,825,109
기정예산 (B)	0	0	73,297,276	0	0	73,297,276
추경증감 (C=A-B)	0	0	-472,167	0	0	-472,167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69,233,195	69,232,237	957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식	금액	비고
천안	15,285,143,000*1식=	15,285,143,000	
공주	4,048,427,000*1식=	4,048,427,000	
보령	2,179,646,000*1식=	2,179,646,000	-47,000
아산	9,121,868,000*1식=	9,121,868,000	-80,000
서산	8,155,441,000*1식=	8,155,441,000	
논산계룡	8,543,928,000*1식=	8,543,928,000	
당진	11,915,976,000*1식=	11,915,976,000	
부여	3,198,963,000*1식=	3,198,963,000	
서천	2,409,941,000*1식=	2,409,941,000	-90,000
청양	1,738,192,000*1식=	1,738,192,000	-90,000
홍성	2,727,228,000*1식=	2,727,228,000	-15,167
예산	3,500,356,000*1식=	3,500,356,000	-150,000
<b>합계</b>		<b>72,825,109,000</b>	<b>-472,167</b>

행 정 과	<b>운영비재정결함보조(감추경) (지역배분)</b>	정 책 사 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역배분 3		단 위 사 업	사학재정지원
기 존 ○		세 부 사 업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신 규		세 세 부 사 업	운영비부족지원
예산서 353쪽	담당자	주무관	신가은 ☎640-813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운영비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사학육성 도모
- 사업대상 : 사립 초·중(43교)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사업주체 :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20,640,418천원(기정예산 21,867,145천원 + 추경예산 △1,226,727천원)**  
 ※증감사유 : 2020.9.1 기준대비 학생수 감소 및 2021.3.1.자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정원배정에 따른 급식 관계자 인건비 감액편성으로 운영비재정결함 소요액 감소(기정예산 대비 1,226,727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사립학교 초·중학교(43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지원
- 편성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편성근거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재정보조)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사립중	20,640,418,000원=	20,640,418	21,867,145	-1,226,727	-내용 ◦ 사립 중학교(6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대상: 사립 중학교(6교) -증감사유: 2020.9.1 기준대비 학생수 감소 및 2021.3.1.자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정원 배정에 따른 급식관계자 인건비 감액편성으로 운영비재정결함 소요액 감소
합계 ①			20,640,418	21,867,145	-1,226,727	※ 추경요구액 합계
미변동 사업금액 ②			191,754	191,754	0	
총사업비 ③=①+②			20,832,172	22,058,899	-1,226,727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A)	0	0	20,640,418	0	0	20,640,418
기정예산(B)	0	0	21,867,145	0	0	21,867,145
추경증감(C=A-B)	0	0	-1,226,727	0	0	-1,226,727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2,654,102	22,654,102	0	100.0%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40억)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 지역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식	금액	비고
천안	3,599,232,000*1식=	3,599,232,000	-392,327
공주	1,137,644,000*1식=	1,137,644,000	
보령	648,198,000*1식=	648,198,000	30,000
아산	2,506,918,000*1식=	2,506,918,000	-100,000
서산	2,521,828,000*1식=	2,521,828,000	-95,469
논산계룡	2,119,333,000*1식=	2,119,333,000	-311,044
당진	3,062,831,000*1식=	3,062,831,000	-210,000
부여	1,270,326,000*1식=	1,270,326,000	16,964
서천	1,078,036,000*1식=	1,078,036,000	-40,000
청양	653,018,000*1식=	653,018,000	
홍성	698,359,000*1식=	698,359,000	-124,851
예산	1,344,695,000*1식=	1,344,695,000	
합계		20,640,418,000	-1,226,727

## II. 세출예산(감추경)

### 4. 안전총괄과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추경 목록

○ 부서(기관)명 : 안전총괄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레벨)	쪽번호			경정예산 (최종예산)	기정예산 (2021 본예산)	추경증감 (경정-기정)
		사업	예산	각목			
1	안전교육및홍보	204	470	158	105,700	124,900	-19,200
2	안전체험시설	206	470	158	24,000	187,800	-163,800
3	산업안전보건교육	208	326	144	71,100	369,760	-298,660
4	사업장안전보건관리	210	327	144	63,320	84,820	-21,500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12	328	145	6,600	13,200	-6,600
합 계					270,720	780,480	-509,760

안전총괄과		<b>안전교육 및 홍보(감추경)</b>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1			단위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
기존	○		세부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신규			세세부사업	안전관리
예산서	470쪽	각 목	158쪽	담당자 주무관 문우진 ☎640-8422

## □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교육훈련 여비

- 사업목적 : 각종 재난과 비상 상황 대비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분야 업무종사자 전문교육 강화
  - 사업대상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재난안전분야 업무 종사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교육지원청
  - 총사업비 : **105,700천원(기정예산 124,900천원 + 추경예산 △19,2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교육 전환 운영(기정예산 대비 19,2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충남교육청 소속 재난안전분야 업무종사자의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훈련 여비 지급
  - 편성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안전관리 담당자교육	연수여비	80,000원*245명*2일=	39,200	58,400	-19,200	-내용: 충남교육청 소속 재난안전분야 업무종사자의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교육훈련 여비 -대상: 충남교육청 재난안전분야 업무종사자(373명)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교육 전환 운영
	소계		39,200	58,400	-19,200	
합계 ①			39,200	58,400	-19,2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66,500	66,500	0	
총사업비 ③=①+②			105,700	124,900	-19,2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105,700	0	0	105,700
기정예산 (B)	0	0	124,900	0	0	124,900
추경증감 (C=A-B)	0	0	-19,200	0	0	-19,2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19,284	87,842	31,442	73.6%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전총괄과		<h1>안전체험시설(감추경)</h1>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2			단위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
기존	○		세부사업	비상대비계획및보안
신규			세세부사업	안전관리
예산서	470쪽	각 목	158쪽	담당자 주무관 김성광 ☎640-841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 및 위기대응능력 향상
- 사업대상 : 각급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24,000천원(기정예산 187,800천원 + 추경예산 △163,8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행사 취소(기정예산 대비 46,20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영역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편성근거 : 충남교육 주요업무계획 2-2-1. 생명 존중 안전한 학교

- [세부과제-43] 체험중심 안전교육
-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정착(200교, 10,000여명)
    - 2021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금산동초 등 6교)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안전체험 한마당	일반수용비	0원=	0	700	-700	-내용 ◦2021 안전체험한마당 행사 개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영역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상: 각급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행사 취소
	위탁용역	0원=	0	42,000	-42,000	
	여비	0원=	0	2,100	-2,100	
	협의회	0원=	0	1,400	-1,400	
	차량지원(공립)	0원=	0	105,000	-105,000	
	차량지원(사립)	0원=	0	12,600	-12,600	
	소계		0	163,800	-163,800	
합계 ①			0	163,800	-163,8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24,000	24,000	0	
총사업비 ③=①+②			24,000	187,800	-163,8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24,000	0	0	24,000
기정예산 (B)	0	0	187,800	0	0	187,800
추경증감 (C=A-B)	0	0	-163,800	0	0	-163,8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377,513	371,493	11,356	98.4%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전총괄과		<b>산업안전보건교육(감추경)</b>	정책사업	보건/급식/체육활동			
3			단위사업	급식관리			
기존	○		세부사업	학교급식관리			
신규			세세부사업	학교급식관계자연수			
예산서	326쪽	각 목	144쪽	담당자	주무관	김소희	☎640-8417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 사업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청소원, 시설관리직, 통학차량지도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71,100천원(기정예산 369,760천원 + 추경예산 △298,660천원)**
-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통신교육, 온라인교육, 이론교육으로 대체(기정예산 대비 298,660천원 감액)
- 사업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직무교육실시(연 2회), 현업업무 종사자(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청소원, 시설관리직, 통학차량지도원)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별 6시간, 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연간 16시간)
- 편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p>※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p> <p>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경비	45,000원*800명=	36,000	189,280	-153,280	-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배치전 8시간)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별 6시간, 연간 24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연간 16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직무교육(신규/보수)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현업업무 종사자(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청소원, 시설관리직, 통학차량지도원)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체교육 실시 어려움(집합교육을 우편통신교육, 온라인교육, 이론교육으로 대체) 및 집체교육시 소요되는 시설임차 및 강사수당 감액
	일반수용비	50,000원*20종*20회=	20,000	112,500	-92,500	
	강사수당	100,000원*25명=	2,500	44,000	-41,500	
	시설임차	0원=	0	5,800	-5,800	
	여비	60,000원*6명*25회=	9,000	13,500	-4,500	
	협의회비	20,000원*6명*30회=	3,600	4,680	-1,080	
	소계			71,100	369,760	
합계 ①			71,100	369,760	-298,660	

구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71,100	369,760	-298,66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71,100	0	0	71,100
기정예산 (B)	0	0	369,760	0	0	369,760
추경증감 (C=A-B)	0	0	-298,660	0	0	-298,66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11,009	110,314	695	99.4%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전총괄과		<h1>사업장안전보건관리(감추경)</h1>	정책사업	보건/급식/체육활동			
4			단위사업	급식관리			
기존	○		세부사업	학교급식관리			
신규			세세부사업	학교급식지도및점검			
예산서	327쪽	각 목	144쪽	담당자	주무관	김소희 박시연	☎640-8417 ☎640-8419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 사전예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 사업대상 : 산업재해 발생학교, 상담 신청학교 현업업무 종사자(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청소원, 시설관리직, 통학차량지도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63,320천원(기정예산84,820천원 + 추경예산 △21,5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학교방문조사 축소로 위험성평가 위탁학교 감소(10교→5교)
- 사업내용
  -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 자문 상담 희망학교, 산업재해 다수 발생학교를 중심으로 순회 지도 및 점검
  - 본청에서 위촉한 산업보건의(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명)가 학교를 방문하여 근무환경에 대한 의학적 조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 자문 상담
- 편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산업보건의	500,000원*3명*11월=	16,500	18,000	-1,500	-내용 ○ 희망학교 및 산재 발생학교 대상 사업순회점검 ○ 산업보건의 건강,상담,교육 프로그램 ○ 위험성평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 요인조사 표준안 제작 -대상: 각급학교 현업업무 종사자 -증감사유: 위험성평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표본학교 축소(10교→5교)
	용역비	4,000,000원*5교=	20,000	40,000	-20,000	
	소계		36,500	58,000	-21,500	
<b>합계 ①</b>			36,500	58,000	-21,500	
<b>미변동 사업금액 ②</b>			26,820	26,820	0	
<b>총사업비 ③=①+②</b>			63,320	84,820	-21,5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63,320	0	0	63,320
기정예산 (B)	0	0	84,820	0	0	84,820
추경증감 (C=A-B)	0	0	-21,500	0	0	-21,5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

안전총괄과		<b>산업안전보건위원회(감추경)</b>	정책사업	보건/급식/체육활동		
5			단위사업	급식관리		
기존	○		세부사업	학교급식관리		
신규			세세부사업	학교급식위원회운영		
예산서	328쪽	각 목	145쪽	담당자	주무관	김나영 ☎640-8415 박승호 ☎640-8416 김소희 ☎640-8417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마련
- 사업대상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동수 구성)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주체 : 본청
- 총사업비 : **6,600천원(기정예산13,200천원 + 추경예산 △6,600천원)**  
 ※증감사유 : 사용자위원은 구성이 되었으나, 근로자위원이 2021년 상반기 중 구성 예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 4분기에 진행 예정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듦. (총4회→2회)
- 사업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편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37조(회의 등)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기초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증감(C=A-B)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수당	100,000원*10명*2회=	2,000	4,000	-2,000	-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별 1회) -대상: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동수 구성) -증감사유: 산업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은 구성이 되었으나, 근로자위원이 2021년 상반기중 구성 예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4분기 진행 예정 (4회→2회)
	여비	60,000원*10명*5일=	3,000	6,000	-3,000	
	협의회	20,000원*16명*5회=	1,600	3,200	-1,600	
	소계		6,600	13,200	-6,600	
합계 ①			6,600	13,200	-6,600	
미변동 사업금액 ②			0	0	0	
총사업비 ③=①+②			6,600	13,200	-6,600	

## □ 편성 요구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국고	특교	자체	지자체	기타	계
경정예산 (A)	0	0	6,600	0	0	6,600
기정예산 (B)	0	0	13,200	0	0	13,200
추경증감 (C=A-B)	0	0	-6,600	0	0	-6,6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19,200	16,376	2,824	85.3%	0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반영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정수물품취득 관리계획 반영 여부	자체투자 심사 여부 (40억)	인력관리심의 위원회 승인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승인 여부
대상	○	×	×	×	×	×
이행	○	×	×	×	×	×